

머리말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내수시장 및 성장가능성 그리고 생산 비용 등이 경제적 요인이며, 투자정책을 포함한 제도 측면과 생활 인프라 등이 비경제적 요인이다.

이 중 경제적 요인은 인구 등 국가가 본래 가진 조건에서 비롯되거나 장기적인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적 초점은 비경제적 요인의 개선에 맞추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좀 더 경영하고 생활하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Invest KOREA는 매년 주요 투자경쟁국과의 비경제적 요인의 투자환경이 어느 수준에 와있으며 각각의 강·약점을 조사 분석을 하여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한국과 무역·투자분야에 있어서 파트너 및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의 투자환경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최근 일본은 종전의 해외투자진출 일변도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전개될 일본의 투자유치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국의 경영·생활 각 분야의 투자환경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여 수고한 투자환경개선팀 담당자와 자료 수집에 협조해준 도쿄 KBC의 조사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8년 12월 5일

Invest Korea 단장 정동수

§ 주요내용 및 요약표 4

I. 서론	7	2. 투자유치정책	
II. 양국의 해외직접투자(FDI)유치 동향		가. 일 본	
가. 일 본		(1) 투자관계 법규	30
(1) 연도별 FDI 동향	9	(2) 투자 인센티브	31
(2) 투자형태별 FDI 동향	9	(3) 최근의 정책방향	32
(3) 산업별 FDI 동향	12	나. 한 국	
(4) 국가별 FDI 동향	14	(1) 투자관계 법규	38
		(2) 투자 인센티브	41
나. 한 국		IV. 투자환경 비교	
(1) 연도별 FDI 동향	16	1. 개 요	47
(2) 투자형태별 FDI 동향	16	2. 경영환경	
(3) 산업별 FDI 동향	17	(1) 세무환경	49
(4) 국가별 FDI 동향	18	(2) 입지환경	67
III. 투자유치제도		(3) 노무환경	80
1. 투자유치기관		(4) 기술 및 R&D환경	102
가. 일 본(JETRO)		3. 생활환경	
(1) 조직구성 및 연혁	21	(1) 주거환경	114
(2) 주요업무 및 기능	22	(2) 교육환경	121
(3) 기타 활동	23	(3) 의료환경	129
나. 한 국(Invest Korea)		(4) 교통환경	135
(1) 조직구성	28	(5) 언어환경	142
(2) 주요업무 및 기능	28	V. 결 론	144
(3) 기타 활동	29		

§.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최근 기술 도입 등을 통한 경제성장력 강화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해외 투자진출의 일변도 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일본은 선진국의 산업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인구의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는 등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특히 한국의 투자확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노사문제나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과 달리 체계적인 투자지원 정책 및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고, 투자 이후에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성(사업내용의 제한, 과실 송금제약,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의 자의적 운용·지연, 법령과 정책의 돌발적인 개폐조치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엄청난 입지비용, 인건비 및 최근의 엔화강세 등은 잠재투자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업 고유의 뚜렷한 경쟁 우위요소가 없는 경우, 일본투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다수의 일본기업과 경쟁에서 성공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요약표

분 야		한 국	일 본
해외 투자 유치 (2007)	GDP대비 투자유치 (유입기준)	54위(0.16%)	51위(0.50%)
	최근 동향	2004년 이후 FDI 감소	2007년 FDI 최고치 기록
	투자 유형	서비스업(72.4%) 투자위주	M&A투자유치의 활성화
	주요 투자 유치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투자 정책	투자유치 기관	KOTRA(Invest Korea)	JETRO
	투자관련 법규	· 대외송금 보장 · 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 내국민과 같은 법규 적용	· 최저자본금제도 철폐 · 보관증명제도 폐지 · 삼각합병 가능
	투자. 인센티브	· 조세감면 · 현금지원 · 재정지원 · R&D센터 활동 촉진	·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없음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인센티브
경영 환경	세무 환경	· 법인세 (08년 개정안) -13%→11%('08)→10%('10) (2억원 이하) -25%→22%('08)→20%('10) (2억원 초과) ※'08년은 과표 1억원 기준임 · 특정지역 및 산업의 외투기업 에 조세휴일 적용	· 법인세: -22%(800만엔 이하), -30%(800만엔 초과) · 특정지역 내 공장건립 시 토지보유세 비과세
	입지 환경	· 사무실 임대료 -서울: 57.09천원/3.3m² -부산: 22.44천원/3.3m² -인천: 26.07천원/3.3m² · 공장부지 -산업시설구역의 m²당 7만원(대불국가산업단지), 20.4만원(광주첨단과학산업단 지)이며 대개 10만원 내외 수준 -산업시설구역이 지원시설 구역보다 50~70% 분양가격 이 낮음	· 사무실 임대료 -도쿄(마루노우치, 오테마치): 42천엔/3.3m² -도쿄(가스미가세키): 30천엔/3.3m² -오사카(우메다): 11천엔/3.3m² · 공장부지 -최저 14.7천엔/m²(미요시공업 단지), 최고 120천엔/m²(호쿠 세츠산다 테크노파크)
	노무 환경	· 노동력 15위, 노동생산성 32위* · 경직된 노동규제로 기업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침 · 노사간에 생산적인 관계 확립 의 필요	· 노동력 7위, 노동생산성 23위* ·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노동력부족 현상 심각 · 성숙한 노사관계 이미 확립
	기술 R&D 환경	· 총 연구개발비 지출: 7위* ·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통신기술: 20위* · 지속적인 R&D 투자확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 연구개발 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총 연구개발비 지출: 2위* ·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통신기술: 17위* · 최근에 연구개발 투자액이 급성장중인 중국, 한국에 비해 성장률 둔화

생활 환경	주거 환경	·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신개념 다운하우스(영국형 주거형태) 공급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	· 잦은 지진으로 주택건축이 매우 엄격함 · 전세가 없으며 월세만이 가능
	교육 환경	·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 학교 입학 제한 · 미국 계열의 외국인 학교수가 많은 것이 특징 · 외국인 학교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 예산 보조	· 대표적인 외국인학교의 도쿄 및 도쿄근교 밀집 · 이민 최다국인 브라질 계열의 학교수가 많은 것이 특징
	의료 환경	· 외국인 진료소가 설치된 종합병원이 있으며 이 중 11개 병원에서 24시간 외국인 진료 서비스 지원 ·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의사수의 절대 부족 및 지역에 따른 의료 시설의 편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외국어 진찰 가능 병원은 지역별로 매우 많음 · 의료보험제도 가입의 의무화
	교통 환경	· 난폭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좋지 못한 운전 매너 · 교통카드 사용 요금 및 환승 할인 시스템이 체계적	· 교통질서 의식 높음, 난폭운전 불친절 적음 · 대중 교통망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나, 운영회사에 따라 운임 체계, 운영시스템이 복잡함 · 대중교통 요금이 아주 비쌈
	언어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 35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 49위*

* 자료: IMD 2008 세계경쟁력연감

I. 서론

-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국내총생산(GDP)규모 세계 2위의 대국임과 동시에 무역, 투자,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파트너임
- IMD '2008 국가 경쟁력 평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2007년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유치(유입기준) 항목에서 각각 일본 0.5%(51위), 한국 0.16%(54위)를 기록하며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부각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FDI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대일투자유식자 회 발족』 후 5가지 제언을 정리 후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5가지 제언>

- ① M&A를 원활화하기 위한 제도정비
 - ② 외자규제에 대한 자세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 ③ 섹터별 중점전략 수립 (의료·바이오 분야 중심)
 - ④ 규제나 제도개혁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
 - ⑤ 외자유치에 의한 지역 활성화와 외자환영 분위기 조성
- 또한 주요 분야별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볼 때, 경제운영성과, 기업 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로 나타나 강력한 투자 경쟁국으로 평가됨

<한국-일본 국제경쟁력 비교 총괄표>

분야	한국	일본
1. 경제운영성과 분야	47위	29위
국내경제(국내총생산, 소비지출, 투자 및 저축, 인플레이션)	29위	7위
국제무역(경상수지, 무역수지, 교역비중, 상품수출입, 관광수입)	40위	39위
국제투자(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자산거래투자 등)	50위	32위
고용(총 취업자수, 취업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공공부문 고용비중 등)	15위	18위
가격(소비자 물가, 생계비지수, 아파트, 사무실 임대료 등)	52위	46위
2. 정부행정효율 분야	37위	39위
공공재정(중앙정부 국내 및 해외부채, 외환보유고 등)	18위	53위
재정정책(총 조세수입, 개인소득세율,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비율 등)	18위	28위

제도적 여건(환율정책, 국가신용등급, 정부정책 일관성, 정부투명성 등)	27위	21위
기업관련법(보호주의여부, 정부보조금, 경쟁규제, 노동규제 등)	50위	24위
3. 기업경영효율 분야	36위	24위
생산효율성(총 생산성,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생산성 등)	36위	31위
노동시장(제조업단위 노동비용, 근로시간, 노사분규, 경제활동 참가율 등)	32위	19위
금융(은행부문자산, 신용카드 발급수, 투자위험, 주식시장 규모 등)	40위	15위
경영활동(기업의 시장변화 적응성, 주주가치, 마케팅관리, 기업가 정신 등)	35위	28위
행태, 가치(문화개방도, 변화적응성, 개선필요성 이해 등)	27위	30위
4. 발전인프라 분야	21위	4위
기본인프라(토지면적, 인구비중, 도로, 철도, 항공, 총 에너지 국내생산 등)	27위	18위
기술인프라(통신투자, 전화요금수준, 인터넷 사용자수, 기술규제 등)	14위	16위
과학인프라(연구개발비 규모, 특허건수, 과학논문 인용회수 등)	5위	2위
보건환경(보건관련 공공지출, 건강수명, 도시인구비, 삶의 질적수준 등)	26위	9위
교육(총 교육비 지출액, 교사비율, 고등교육 수확율, 문맹률 등)	35위	22위

□ 위의 IMD 조사는 전반적 경쟁력에 한하여 측정을 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의 양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하고 한국의 투자환경의 강·약점 및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II. 양국의 해외직접투자(FDI)유치 현황

가. 일 본

(1) 연도별 FDI 동향

- ☐ 일본은 1998년 금융빅뱅에 의한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의 개정, 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외국자본규제의 철폐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틀을 마련함
- ☐ 이와 같은 투자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 이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누계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222억불로 과거최고인 99년도 123억불을 넘어서며 기록을 갱신함

<일본 FDI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불)>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투자액	9,245	6,287	7,809	3,223	6,789	22,181
투자잔고	78,490	89,838	97,305	101,322	107,663	133,888

(자료원 : JETRO 무역투자백서)

- ☐ 2007년은 스웨덴 볼보사의 닛산디젤사 인수 및 GIC와 미국투자가에 의한 호텔분야 대형투자건 등으로 FDI 잔고가 늘어나, GDP 대비 비율도 전년도 2.5%에서 2.9%로 상승함

<일본 FDI잔고의 GDP대비 비율 추이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율	1.1	1.3	1.9	2.0	2.0	2.4	2.5	2.9

(자료원 : 재무성/일본은행, 내각부)

(2) 투자형태별 FDI 동향

- ☐ 직접투자의 형태는 크게 나누면 Greenfield형(투자대상국에 새로운 법인, 생산설비 등을 설립)과 M&A형(기업 합병 및 인수)이 있는데, 2006년도 전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67%를 M&A형이 차지하고 있음

- M&A는 기존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기업조직개편에 의한 규모경제의 획득,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판매망의 확대 등 효율성 측면의 효과가 있음. 또한 합병하는 기업간에 서로의 강점을 살림으로써 경영이나 제품개발, 생산프로세스의 이노베이션을 실현가능하며 해당산업 전체의 생산성 상승도 기대됨
- 일본에서도 M&A건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추세이며, 국내기업간의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나 해외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M&A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7년 FDI 액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형 M&A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톰슨로이터의 데이터(완료베이스)에 의하면 2007년 대일 M&A는 225억 8,423만 불로 기존의 최고점인 2001년(190억 925만 불)을 넘어서며 과거 최고를 갱신함
- 가장 주목되는 대형투자는 미국 시티그룹의 일본 닛코코디알그룹을 완전 자회사화하는 M&A건인데, 시티그룹은 2007년중에 88억 불, 2008년도 거래까지 합하면 134억불을 출자한 셈임. 이는 보다폰 홀딩즈의 닛폰텔레콤 인수안건(99년, 2001년, 합계 30억9,500만 불)을 제외하고는 최대 M&A건임
- 위의 건을 제외한 자본유입액(588억 불)도 전년수준(455억 불)을 넘어서는 등 외국기업에 의한 대일투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건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거액의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으나 PEF(Private Equity Fund) 등의 출자로 펀드와 공동으로 기업가치향상을 도모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예시) 2004년 운반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K사를 대상으로, C사(펀드)가 우호적인 TOB(Take Over Bid)를 통해 MBO(Management Buyout)를 행함. 이후 K사는 C사의 서포트를 받으며 경영혁신을 추진, 성장을 가속화하였으며 2007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재상장한 바 있음

<형태별 투자건수 추이>

	M&A 투자			그린필드투자	합계
	일본기업	일본내 외국기업 (일본법인)	소계		
2004년	206	22	228	46	274
2005년	179	27	206	68	274
2006년	171	36	207	60	267
합계	556	85	641	174	815

(자료원 : 일본 내각부 조사자료 2007년)

- 외국기업(일본소재 현지법인 제외)에 의한 대일 M&A투자건수는 작년 158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최근 건수 추이는 아래와 같음

<외국소재 외국기업의 대일M&A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월~8월)
건수	158	115	108	104	125	116	111	158	65

(자료원 : JETRO 해외조사부)

- 대일 M&A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업종으로의 M&A 투자가 활발했으며, 경영부진에 빠진 기업을 펀드가 인수하여 재건후 타업체에게 매각 혹은 주식상장 등으로 투자회수를 도모하는 형태도 증가하였음. 또한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관련 투자가 활발했던 것도 M&A 금액 및 건수를 올리는 요인이 됨
- 2007년도 이후의 M&A의 움직임은 금융이나 자동차, 의약품 등의 업계에 있어서 기업규모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세계규모의 업계재편이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대일 M&A 추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주요 대일M&A 사례 (2007년 1월 - 2008년 6월)>

	피인수기업	업종	인수기업			금액 (백만 불)	인수후 출자율 (%)
				국가	업종		

2007.1 - 2008.1	닛코코디얼그룹	증권	시 티 그 룽 재팬홀딩스	미국	지주회사	13,351	98.7
2007.6	젠닛쿠공수그룹 의 직영호텔	항공 운송	시로야마프 로파티즈	미국	금융	2,361	100.0
2007.3	닛산디젤	트럭/ 버스차 체제조	엔에이주식 회사	스웨덴	자동차	2,294	94.6
2008.3	아리스타라이프 사이언스	화학	인더스트리 얼에퀴티인 베스트	영국	금융	2,185	100.0
2007.3	호크스타운	백화점	GIC	싱가폴	증권투자 고문업	862	100.0
2007.12	세이유	소매	와이오밍홀 딩	스위스	투자 지주회사	815	96.4
2008.2	웨스턴호텔도쿄	호텔	GIC리얼에 스 테 이 트 PTE	싱가폴	REIT	722	100.0
2007.7	TDK브랜드기록 미디어판매사업 /자회사	전기 기기	이메이션코 퍼레이션	미국	컴퓨터/ 기억장치	379	100.0

(자료원 : JETRO 무역투자백서)

(3) 산업별 FDI 유치 동향

□ 제조업에서는 석유 및 유리, 토석, 철, 비철금속 등 소재업종에서 주로 자본이 유입됨

○ 화학/의학분야는 10억 불 가까이 자본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독일 바이엘사가 공장 및 연구시설을 매각한 뿐 아니라 그 외 구미 제약회사가 신약개발체제의 효율화나 경비삭감을 목적으로 일본국내의 연구시설을 축소 혹은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 기계류에서는 스웨덴 볼보사에 의한 닛산디젤의 인수 안전으로 수송기계기구 분야가 전년 14억 불 유출초과에서 3억 불 유입초과로 전환됨

□ 비제조업에서는 시티그룹의 M&A 건에 의해 금융/보험업으로의 유입액이 177억 불 규모로 크게 늘어났고, GIC 및 미국투자가에 의한 호텔 대형투자 건이 있었던 부동산업이 14억 불 유입초과를 보임

<일본 업종별 FDI 추이(국제수지베이스, 단위 : 100만불, %)>

	2005년	2006년	2007년		
				구성비	증감율
제조업	△2,191	254	1,381	6.2	443.2
식료품	△211	△717	365	1.6	n/a
섬유	188	58	109	0.5	87.5
목재/펄프	△22	△23	3	0.0	n/a
화학/의료	△1,168	1,538	△1,010	n/a	n/a
석유	△44	37	935	4.2	2,424.2
고무/피혁	1	35	35	0.2	1,185.5
유리/토석	103	193	663	3.0	244.1
철/비철/금속	△34	60	230	1.0	284.8
일본기계기구	164	△24	△22	n/a	n/a
전기기계기구	△1,195	32	△391	n/a	n/a
수송기계기구	32	△1,408	331	1.5	n/a
정밀기계기구	△59	598	20	0.1	△96.6
비제조업	5,414	△7,043	20,800	93.8	n/a
농림업	△1	11	41	0.2	274.3
어업/수산업	0	△39	33	n/a	n/a
광업	0	1	-	n/a	n/a
건설업	41	37	19	0.1	△49.6
운수업	2,108	28	△288	n/a	n/a
통신업	912	△9,715	△633	n/a	n/a
도소매업	1,157	△387	1,660	7.5	n/a
금융/보험업	645	2,265	17,661	79.6	679.6
부동산업	15	72	1,413	6.4	1,868.0
서비스업	178	122	295	1.3	140.8
합 계	3,223	6,789	22,181	100.0	n/a

※△는 인양초과를 나타냄

(자료원 : JETRO 무역투자백서 2008)

(4) 지역별 FDI 유치 동향

- ☐ 일본은 서유럽과 북미에서 80.9%로 대부분의 FDI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33.5%로 대일투자액이 가장 많고, 네덜란드가 19.4%로 뒤를 이음
- ☐ 중남미의 케이만제도가 7.8%로 3위인 프랑스(9.5%) 다음으로 대일투자가 많

은 국가인 점이 특징

<국가별 대내직접투자잔고(단위 : 백만불, %)>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구성비
아시아		6,702	8,247	9,390	7.0
	중국	102	100	125	0.1
	홍콩	2,612	1,928	2,301	1.7
	대만	1,391	1,475	1,534	1.1
	한국	313	423	694	0.5
	ASEAN	2,264	4,310	4,721	3.5
	태국	42	42	44	0.0
	인도네시아	6	8	9	0.0
	말레이시아	13	13	1	0.0
	필리핀	44	43	46	0.0
	싱가폴	2,159	4,205	4,620	3.5
	베트남	n/a	n/a	0	0.0
	인도	10	9	13	0.0
대양주		478	492	779	0.6
	오스트레일리아	472	485	764	0.66
	뉴질랜드	3	3	11	0.0
북미		47,729	44,273	45,947	34.3
	미국	43,888	41,989	44,795	33.5
	캐나다	3,841	2,284	1,152	0.9
중남미		8,218	12,123	15,227	11.4
	멕시코	4	4	5	0.0
	브라질	31	30	32	0.0
	케이만제도	5,599	8,400	10,469	7.8
서유럽		38,101	42,367	62,341	46.6
	EU	35,758	39,625	55,117	41.2
	독일	5,904	4,582	3,811	2.8
	영국	3,033	4,983	5,962	4.5
	프랑스	10,777	11,549	12,776	9.5
	네덜란드	11,654	12,175	26,025	19.4
	이탈리아	559	495	509	0.4
	벨기에	474	1,901	1,947	1.5
	룩셈부르크	1,632	1,635	2,267	1.7
	스웨덴	352	742	709	0.5
	스페인	111	195	102	0.1
스위스		2,264	2,640	3,942	2.9
동유럽/러시아		47	47	46	0.0
	러시아	46	46	48	0.0
중동		14	14	20	0.0
	사우디아라비아	2	2	3	0.0

	UAE	1	1	1	0.0
	이란	-	-	0	n/a
	아프리카	1	63	99	0.1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0.0
	OECD제국	86,553	87,463	106,484	79.5
	합계	101,322	107,663	133,888	100.0

※△는 인양초과를 나타냄

(자료원 : JETRO 무역투자백서 2008)

나. 한 국

(1) 연도별 FDI 동향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음
- 1997년까지 신고누적금액은 246억불인 것에 비교하여, 1998년 이후 투자금액은 이전의 약 4배 수준인 1,126억불에 이름

<연도별 FDI 신고금액 추이>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금 액	8,853	15,531	15,212	11,292	9,101	6,467	12,792	11,563	11,233	10,514
(증감율)	(△27.0)	(△75.4)	(▽2.1)	(▼25.8)	(▽19.4)	(▼28.9)	(▲97.7)	(▽9.6)	(▽2.9)	(▽6.4)

- 2001년 미국의 9.11테러와 IT버블 붕괴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200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최근 세계적인 M&A 활성화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달리, 2007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105억 달러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2) 투자형태별 FDI 동향

- 한국의 2004년 이후의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감소는 M&A형 투자유입액의 감소에 기인함
- Greenfield형 투자는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M&A형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형태별 FDI 신고금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M&A 형	1,904 (16.9)	2,107 (23.2)	2,026 (31.3)	6,167 (48.2)	5,268 (45.6)	4,305 (38.3)	2,483 (23.6)
Greenfield형	9,388 (83.1)	6,994 (76.8)	4,441 (68.7)	6,625 (51.8)	6,295 (54.4)	6,927 (61.7)	8,031 (76.4)
전 체	11,292	9,101	6,467	12,792	11,563	11,233	10,514

(자료원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중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8,031백만불을 기록한 반면에, M&A형 투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2,483백만불 기록

(3) 산업별 FDI 유치 동향

- 2000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평균 30%,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6.6% 감소한 2,692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4.9% 증가한 7,612백만불을 기록

-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투자가 서비스업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투자신고 금액>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 조 업	2,911 (25.8)	2,336 (25.7)	1,697 (26.2)	6,217 (48.6)	3,076 (26.6)	4,243 (37.8)	2,692 (25.6)
(부품·소재)	1,353 (12.0)	1,210 (13.3)	1,286 (19.9)	4,287 (33.5)	2,105 (18.2)	3,187 (28.4)	2,353 (22.4)
서비스업	7,235 (64.1)	5,131 (56.4)	4,131 (63.9)	6,141 (48.0)	8,301 (71.8)	6,622 (59.0)	7,512 (72.4)
기 타	1145 (10.1)	1634 (18.0)	639 (9.9)	434 (3.4)	187 (1.6)	368 (3.3)	210 (2.0)
전 체	11,292	9,101	6,467	12,792	11,563	11,233	10,514

-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역시 서비스업을 특히 금융, 보험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기·전자분야 중심의 제조업의 투자유치는 저조하였음

2007년 (서비스업) 외투기업 사례

- 美 Forever21, 송도 대형 쇼핑몰 추진 프로젝트, Mall of Korea

2008년 주요 투자 사례

- **Prologis** 社(싱가포르), 안성, 오정에 선진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5.8억불 투자신고('08.4 대통령 방미활동 관련 프로젝트)
- **Tesco** 社(네덜란드), 홈에버 인수 및 사업 확장으로 3.5억불 투자 신고
- **Bosch** 社(독일), 하이브리드차량용 2차 전지 분야에서 삼성과의 합작 투자(향후 5년간 3억불 투자 계획)관련 1억불 신고

⇒ 도·소매 및 물류업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0.1%, 102.2%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또한 전기·전자(418.3% 증가) 중심으로 8.9% 증가세 유지

(자료원: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4) 국가별 FDI 유치 동향

-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대형 프로젝트의 성사로 인해 3년 연속 최대 투자권역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전기·전자, 비즈니스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각각 1700.1%, 149.2% 증가한 106백만불, 176백만불 기록)

<지역별 투자 유입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 국	3,889 (34.4)	4,500 (49.4)	1,240 (19.2)	4,717 (36.9)	2,690 (23.3)	1,701 (15.1)	2,341 (22.3)
일 본	772 (6.8)	1,404 (15.4)	541 (8.4)	2,262 (17.7)	1,879 (16.2)	2,108 (18.8)	990 (9.4)

E U	3,062 (27.1)	1,663 (18.3)	3,061 (47.3)	3,009 (23.5)	4,781 (41.3)	4,977 (44.3)	4,332 (41.2)
기 타	-	-	-	2,804 (21.9)	2,214 (19.1)	2,447 (21.8)	2,852 (27.1)
전 체	11,292	9,101	6,467	12,792	11,563	11,233	10,514

<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

	2006 년	2007년					2008년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계
미 국	1,705 (15.2)	198 (12.4)	148 (8.4)	587 (19.9)	1,407 (33.5)	2,341 (22.3)	453 (16.7)	240 (13.1)	253 (8.8)	947 (12.8)
일 본	2,111 (18.8)	139 (8.7)	149 (8.4)	191 (6.5)	512 (12.2)	990 (9.4)	252 (9.3)	393 (21.4)	239 (8.3)	884 (11.9)
E U	4,970 (44.2)	843 (52.7)	745 (42.1)	1,319 (44.7)	1,425 (34.0)	4,332 (41.2)	1,539 (56.7)	609 (33.3)	1,442 (50.2)	3,590 (48.4)
기 타	2,456 (21.8)	420 (26.2)	727 (41.1)	854 (28.9)	852 (20.3)	2,852 (27.1)	472 (17.4)	590 (32.2)	939 (32.7)	2,001 (27.0)
전 체	11,242	1,599	1,769	2,951	4,195	10,514	2,715	1,832	2,873	7,421

* ()내는 비중

□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하고(239백만불) 투자비중은 8.3%를 차지하여 미국과 비슷한 수준

○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88.4% 증가한 97백만불을 기록하여 일본 전체 투자금액의 40.5% 차지

□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56.9% 감소한 253백만불을 기록, 투자비중은 8.8%로 감소

○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한 24백만불을 기록하고, 서비스업은 57.0% 감소한 229백만불을 기록

[2007년 주요투자사례 독일 Rohm &Hass사]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 2007-08-16 12:05

롬&하스(Rohm and Haas Company)와 SKC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산

업에서 사용되는 광학 및 특수 필름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양사가 가진 기술력 및 강점을 통합해 최첨단의 LCD 및 PDP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 필름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SKC는 자사의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계획이며, 롬&하스는 해당 합작 법인에 지분 투자를 통해 51%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사 설립은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 2007년 4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중략)

새 합작 법인은 두 훌륭한 기업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롬&하스 전자 재료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고성장의 평판 패널 산업에서 롬&하스 영향력을 적극 확대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 합작 법인이 개발, 생산, 판매하게 될 제품에는 LCD와 PDP를 위한 특수 디스플레이 필름 제품군이 있다. 또한 이 합작 기업은 LCD 컬러 플레이트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핵심 요소인 안료 분산(dispersions of pigments)을 포함한다.

이러한 필름 및 재료뿐만 아니라, 롬&하스의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기술 비즈니스는 TFT 감광제, 컬러 필터 크롬 패터닝과 같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한다.

Ⅲ. 투자유치 제도

1. 투자유치기관

가. 일 본(JETRO)

(1) 조직 구성 및 연혁

- 일본에서는 정부의 대일투자캠페인 하에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투자유치홍보나 외투기업지원 등 대일투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직 개요 및 연혁>

명칭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근거법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근거법 (2002년12월13일 법률제172호)
설립	2003년 10월 1일
소재지	도쿄도 아카사카 1-12-32 TEL. 03-3582-5511
사업소수	국내 : 본부(도쿄), 오사카본부, 아시아경제연구소, 무역정보센터 36개소 해외 : 54개국 73사무소 (2008년4월1일 현재)
사원수	국내 약 810명 해외 약 790명 합계 약 1,600명
연혁	1951 재단법인 해외시장조사회 발족 1954 재단법인 해외무역진흥회 발족 1958 특수법인 일본무역진흥회 발족 1960 아시아경제연구소 발족 1963 수출질서유지 대책 사업 (해외수입제한에 대처) 1973 해외투자상담사업 개시 1990 수입촉진부 설치 1993 수입비즈니스서포트센터 설치 1995 대일역세스조사 개시 1998 제트로아시아경제연구소 통합 2002 경제법제도와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 FTA대응) 2003 대일투자/비즈니스서포트센터 설치,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발족

(2) 주요 업무 및 기능

□ 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지원센터 (IBSC)

- IBSC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입각하여, 일본진출을 검토하는 외국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절차정보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함. IBSC에서는 각 성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법률, 각종기준, 규제 등의 행정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각 지방 자치단체의 인센티브나 비즈니스환경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 전속직원과 고문이 시장·산업정보나 일본기업과의 연계,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절차 등의 정보제공, 사업계획, 법무·노무관계 등 상담을 실시
- 시장·산업별 고문: 바이오, 정보통신, 기계, 식품, 일반소비재,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환경기기, 의류, 잡화, 무역투자실무전반 등의 전문가 상담 제공
- 기업설립 고문: 법인설립, 비자,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전문가 상담 제공
- IBSC는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전개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별사무실을 제공하며 고문, 직원이 문제나 질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이용희망자는 가까운 IBSC, JETRO 해외·국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입주 사전심사가 있음

<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지원센터(IBSC) 현황>

도쿄	〒107-6006 東京都港区赤坂1-12-32 アーク森ビル7階 Tel : 03-3582-4685 Fax : 03-3584-6024
요코하마	〒231-0023 神奈川県横浜市中区山下町2番地 産業貿易センタービル9階 Tel : 045-222-8911 Fax : 045-662-4980
나고야	〒460-0003 愛知県名古屋市中区錦2-2-22 名古屋センタービル別館8階 Tel : 052-222-4711 Fax : 052-222-4750
오사카	〒530-0005 大阪府大阪市北区中之島3-3-3 中之島三井ビル5階 Tel : 06-6447-2309 Fax : 06-6447-2329
고베	〒651-6591 兵庫県神戸市中央区浜辺通5-1-14 神戸商工貿易センタービル4階 Tel : 078-252-7505 Fax : 078-252-7506
후쿠오카	〒810-0001 福岡県福岡市中央区天神1-4-2 エルガーラ7階 Tel : 092-735-4224 Fax : 092-714-0709

☐ 대일투자촉진그룹 초청 프로그램

- 대일투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는 일본시찰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시찰투어, 비즈니스 파트너 후보와의 상담 등으로 짜여 있으며, 참가자의 여비 및 체재비는 JETRO가 부담

☐ 산업 투어

- 일본 각지의 산업집적지 등 투자유망지역을 소개하는 시찰 프로그램으로 재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세미나, 심포지엄 및 상담회

- JETRO의 해외사무소는 대일투자에 관련된 폭넓은 테마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보제공 외에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일투자 심포지엄, 세미나, 상담회 등을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함

☐ 대일투자정보 웹사이트

- Investing in Japan(www.investjapan.org)은 대일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문의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일투자부 대일투자과, Tel 03-3582-5571, Fax 03-3505-1990, invest-japan@jetro.go.jp)

(3) 기타 활동

☐ 대일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

- 2003년 3월 27일 회사설립, 합병, 공장 및 점포 설립 등에 관한 각종 투자절차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창구를 JETRO에 설치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에서 종합안내창구를 설치, 2003년 5월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함
- 안내창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즈니스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시장정보 및 투자시책 등, 투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뢰
- 투자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방법교시 의뢰
- 투자에 관한 법령적용 사전수속(일본판 노액션레터제도)에 의한 조회 처리에 관련된 조회자의 고충 처리 및 담당과와의 조정
- 기타 투자에 관한 조회 의뢰

<대일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

내각부 정책총괄관부 대일직접투자촉진대책실 Tel : 03-3581-8950 (직통) Fax : 03-3581-4772 E-mail : invest-japan.be@cao.go.jp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관방 국제과 Tel : 03-3581-1998 (직통) Fax : 03-3581-1944 E-mail : invest-japan@jftc.go.jp
금융청 총무기획국 총무과 국제실 Tel : 03-3506-6049 (직통), 03-3506-6000 (대표) 내선 3199 Fax : 03-3506-6113 E-mail : invest-japan@fsa.go.jp
총무성 대신관방 기획과 Tel : 03-5253-5156 (직통) Fax : 03-5253-5160 E-mail : invest-japan@soumu.go.jp
법무성 대신관방 비서관 Tel : 03-3592-7420 (직통), 03-3580-4111 (대표) 내선 2087 Fax : 03-5511-7200 E-mail : invest-japan@moj.go.jp
외무성 경제국 정책과 Tel : 03-3580-8015 (직통) Fax : 03-5501-8335 E-mail : invest-japan@mofa.go.jp
재무성 국제국 조사과 외국환실 Tel : 03-3581-8015 (직통) Fax : 03-5251-2167 E-mail : invest-japan@mof.go.jp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정책과 Tel : 03-5253-4111 (직통) Fax : 03-6734-3650 E-mail : invest-japan@mext.go.jp
후생노동성 정책총괄관부 노동정책담당참서관실 Tel : 03-5253-1111 (대표) 내선 7718 Fax : 03-3502-5395 E-mail : invest-japan@mhlw.go.jp
농림수산업성 종합식료국 식품산업기획과 Tel : 03-3502-5742 (직통), 03-3502-8111 (대표) 내선 5617,5619 Fax : 03-3508-2417 E-mail : invest_japan@nm.maff.go.jp
경제생산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Tel : 03-3501-1774 (직통) Fax : 03-3501-2082 E-mail : invest-japan@meti.go.jp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국제기획실 Tel : 03-5253-8313 (직통) Fax : 03-5253-1561 E-mail : invest-japan@mlit.go.jp
환경성 종합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Tel : 03-5521-8324 (직통) Fax : 03-3580-9568 E-mail : invest-japan@env.go.jp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지원센터 Tel : 03-3582-4685 (직통) Fax : 03-3584-6024 E-mail : invest-japan@jetro.go.jp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부
Tel : 03-3244-1770 (직통)
Fax : 03-3245-1938

E-mail : dbjmail@dbj.go.jp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

- 일본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이 사업세 감면, 고정자산세 감면, 부동산취득세 감면 등의 우대세제,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보조금, 토지·건물 취득, 운전자금이나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대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나 제도로 정하고 있음

※ 상세한 투자환경정보를 JETRO의 웹사이트 "Investing in Japan"내의 지역별 투자환경가이드(<http://www.jetro.go.jp/invest/region>) 및 동사이트의 각 지자체의 기업입지 관련 링크를 통해 얻을 수 있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외투 기업 유치 담당부국 연락처>

도도부현

도시명	담당부국	TEL	FAX	E-mail
홋카이도	경제부산업입지추진국 산업입지과	011-204-5324	011-232-2139	keizai.sanrichi@pref.hokkaido.lg.jp
아오모리현	상공노동부공업진흥과 산업입지추진그룹	017-734-9380	017-734-8109	kogyo@pref.aomori.lg.jp
이와테현	상공노동관광부 기업입지추진과	019-629-5561	019-629-5569	AE0004@pref.iwate.jp
미야기현	산업경제부 산업입지추진과	022-211-2732	022-211-2739	invest@pref.miyagi.jp
아키타현	산업경제노동부 유치기업실	018-860-2251	018-860-3887	induprom@pref.akita.lg.jp
야마가타현	상공노동관광부 공업진흥과	023-630-2690	023-630-2695	kogyo@pref.yamagata.jp
후쿠시마현	상공노동부지역경제영역 입지그룹	024-521-7280	024-521-7935	investment@pref.fukushima.jp
이바라키현	산업입지추진도쿄본부	03-3243-0845	03-3243-0846	santou@pref.ibaraki.lg.jp
토치기현	상공노동관광부산업정책과 국제경제담당	028-623-3165	028-623-3167	syoko@pref.tochigi.jp
군마현	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 산업집적촉진실	027-226-3326	027-223-5470	sangyo@pref.gunma.jp
사이타마현	산업노동부 기업유치추진실	048-830-3766	048-830-4813	a3740@pref.saitama.lg.jp
	SBSC 사이타마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048-647-4156	048-647-4157	sbsc@saitama-bsc.jp
치바현	상공노동부기업입지과 외자계기업유치추진실	043-223-2749	043-222-4092	rich4@mz.pref.chiba.lg.jp
	치바투자지원센터(CISC)	043-299-2910	043-299-3411	cisc@businesssupport-chiba.jp
도쿄도	산업노동국상공부 경영지원과	03-5320-4798	03-5388-1465	S0000481@section.metro.tokyo.jp
	도쿄비즈니스엔트리포인트	03-5320-4889		support@tokyo-business.jp
카나가와현	상공노동부산업활성과 경제교통반	045-210-5565	045-210-8868	ee.65@pref.kanagawa.jp
니이가타현	산업노동관광부 산업입지과	025-280-5248	025-280-5508	sanritu@mail.pref.niigata.jp
도야마현	상공노동부입지통상과 기업유치계	076-444-3244	076-444-8753	richitsusho2@pref.toyama.jp
이시카와현	상공노동부산업정책과 국제비즈니스지원데스크	076-225-1509	076-225-1514	ksupport@pref.ishikawa.jp
후쿠이현	산업노동부기업유치과 기업입지추진실	0776-20-0375	0776-20-0678	k-yuchi@pref.fukui.lg.jp

야마나시현	상공노동부상공총무과 기업입지담당	055-223-1545	055-223-1534	shoukosomu@pref.yamanashi.lg.jp
나가노현	상공부비즈니스유평팀 산업유치유닛	026-235-7193	026-235-7496	business@pref.nagano.jp
기후현	산업노동부 기업유치과	058-272-1111	058-272-5722	c11342@pref.gifu.lg.jp
시즈오카현	상공노동부 산업집적실	054-221-2217	054-221-3216	sankoku@pref.shizuoka.jp
아이치현	산업노동부산업입지통상과 국제산업교통그룹	052-954-6356	052-961-7693	ricchitsusho@pref.aichi.lg.jp
	아이치·나고야 국제비즈니스·엑세스·센터 (I·BAC)	052-223-5403	052-223-5404	info@i-bac.jp
미에현	농수산공부 기업입지실	059-224-2819	059-224-2221	kigyori@pref.mie.jp
시가현	상공관광노동부 신산업진흥과	077-528-3792	077-528-4876	fd00@pref.shiga.lg.jp
	상공관광노동부 국제과	077-528-3061	077-521-5030	fh00@pref.shiga.lg.jp
교토부	상공부산업활력지원총괄실 경제교통·무역실	075-414-4840	075-414-4842	trade@mail.pref.kyoto.jp
	교토외국기업유치연락회	075-325-2075	075-325-2075	jetro-kyoto@ki21.jp
오사카부	상공노동부산업노동기획실 기업유치추진과	06-6944-8160	06-6944-8721	Sanrokikaku-g06@sbox.pref.osaka.lg.jp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	06-6944-6298	06-6944-6293	o-bic@osaka.cci.or.jp
효고현	산업노동부국제국 국제경제과	078-362-4158	078-361-2540	kokusaikeizaika@pref.hyogo.jp
나라현	상공노동부 공업지원과	0742-27-8813	0742-27-4473	kogyo@office.pref.nara.lg.jp
와카야마현	상공노동부기업입지국 기업입지과	073-441-2748	073-422-1933	e0622001@pref.wakayama.lg.jp
돗토리현	상공노동부 산업개발과	0857-26-7245	0857-21-0609	sangyokaiatsu@pref.tottori.jp
시마네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	0852-22-6693	0852-22-6080	kigyo-richi@pref.shimane.lg.jp
오카야마현	산업노동부산업기획과 경제국제화추진반	086-226-7365	086-225-3449	sanki@pref.okayama.jp
히로시마현	상공노동부 국제비즈니스촉진실	082-222-0207	082-223-2136	syokokusai@pref.hiroshima.jp
야마구치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추진실	083-933-3145	083-933-3178	a169001@pref.yamaguchi.jp
도쿠시마현	상공노동부 산업진흥과	088-621-2156	088-621-2853	sangyoushinkouka@pref.tokushima.lg.jp
카가와현	상공노동부산업정책과 산업집적추진실	087-832-3354	087-833-4931	sangyo@pref.kagawa.lg.jp
에히메현	경제노동부관리국 산업정책과	089-912-2465	089-933-2554	sangyoseisaku@pref.ehime.jp
고치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	088-823-9693	088-823-9268	150201@ken.pref.kochi.lg.jp
후쿠오카현	상공부 국제경제관광과	092-643-3430	092-643-3431	info@investfk.jp
	해외기업유치센터(도쿄사무소)	03-3261-7017	03-3261-7017	
사가현	농림수산상공본부 신산업과	0952-25-7097	0950-25-7282	shinsangyo@pref.saga.lg.jp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기업진흥·입지추진본부 기업유치추진그룹	095-820-8890	095-827-5243	ritti@joho-nagasaki.or.jp
쿠마모토현	상공관광노동부 기업입지과	096-333-2330	096-385-5797	kigyouricchika@pref.kumamoto.lg.jp
오이타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추진과	097-535-2022	097-532-9386	a14050@pref.oita.lg.jp
미야기현	상공관광노동부 신산업지원과	0985-26-7096	0985-32-4457	shinsangyo@pref.miyazaki.lg.jp
카고시마현	상공노동부 산업입지과	099-286-2983	099-286-5578	yuuti@pref.kagoshima.lg.jp
오키나와현	관광상공부 기업입지추진과	098-866-2770	098-866-2846	indus-pr@pref.okinawa.jp

정령지정도시*

도시명	담당부국	TEL	FAX	E-mail
삿포로시	경제국산업진흥부 공업진흥담당국	011-211-2362	011-218-5130	sangyo-k@city.sapporo.jp
센다이시	경제국국제경제·관광부 국제프로젝트추진국	022-214-8046	022-214-8316	kei008070@city.sendai.jp
사이타마시	환경경제국경제부 산업전개추진국	048-829-1349	048-823-1987	sangyo-tenkai-suishinka@city.saitama.lg.jp
	SBSC 사이타마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048-647-4156	048-647-4157	sbsc@saitama-bsc.jp
치바시	경제농정국경제부 경제진흥과	043-245-5276	043-245-5558	keizai.EAE@city.chiba.jp
가와사키시	경제국산업정책부 산업유치과	044-200-2336	044-200-3920	28yuti@city.kawasaki.jp
	경제국 아시아기업가지원사업추진부	044-200-2361		28asia@city.kawasaki.jp
요코하마시	경제관광국 유치·국제경제과	045-671-3834	045-661-0692	ke-yuchi@city.yokohama.jp
시즈오카시	경제국상공부 산업정책과	054-221-1303	054-221-1596	sangyouseisaku@city.shizuoka.jp
나고야시	시민경제국산업부 산업육성과	052-972-2422	052-972-4135	a2420@shiminkeizai.city.nagoya.lg.jp
교토시	산업관광국상공부 산업진흥과	075-222-3324	075-222-3331	sanshin@city.kyoto.jp
오사카시	경제국기획부 국제경제과	06-6208-8963	06-6202-6965	ga0005@city.osaka.lg.jp
	IBPC 오사카기업유치센터	06-6615-7000	06-6616-4130	ipc@ibpcosaka.or.jp
사카이시	산업진흥국 산업재생추진실	072-228-7629	072-228-8816	sansaisei@city.sakai.osaka.jp
고베시	고베엔터프라이즈프로모션뷰로	078-322-5337	078-322-6072	invest@office.city.kobe.jp
히로시마시	경제국 산업입지추진과	082-504-2241	082-504-2259	sangyo@city.hiroshima.jp
키타큐슈시	산업학술진흥국지역산업부 무역진흥과	093-582-2062	093-582-3865	san-boueki@mail2.city.kitakyu-syu.jp
후쿠오카시	경제진흥국 국제경제부	092-711-4343	032-733-5593	invest@city.fukuoka.jp

*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정령(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으로 지정된 도시. 시민 생활 및 행정을 독립적으로 관할할 수 있음

나. 한 국(InvestKorea)

(1) 조직구성

□ Invest Korea의 조직구성 및 부서별 기능은 다음과 같음

부 서		주요기능	전화번호
Invest KOREA 단장	투자전략팀	투자유치 전략 및 계획 수립, IK업무 총괄 등	02-3460-7538
	투자홍보팀	·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대·내외 홍보 · 지자체 상품화 투자유치단 지원	02-3460-7534
	투자조사연구팀	· 외국인투자 통계 작성, 관리 및 분석 · 외국인투자(기업) 동향 파악 및 조사 · 외국인투자 정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02-3460-7574
	주력산업유치팀	주력산업 및 부품소재 투자유치	02-3460-7613
	금융·서비스 산업유치팀	· 물류, 유통 등 서비스분야, SOC 및 대체에너지 · 금융HUB 유치강화	02-3460-7525
	신산업유치팀	IT, BT 등 신산업 및 R&D센터 투자유치	02-3460-7596
	투자협력지원팀	국내 매물 발굴 및 해외 투자가 유치(기능강화)	02-3460-7627
	종합행정지원팀	· 투자 인.허가, 투자절차 대행, 투자신고 접수 · 직접처리민원사무 처리	02-3460-7543
	투자컨설팅팀	전문 분야별 투자상담, 국내기업 알선·중개	02-3497-1925
	투자환경개선팀	· 투자환경개선 사업 및 투자환경 조사분석 /IKP 운영 및 관리 · 투자환경 개선과제 발굴등	02-3497-1013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및 고충처리	02-3460-7635

(2)주요 업무 및 기능

-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인투자가의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지원
- 법률, 세무, 회계와 관련된 질의 응답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 방안 자문
- 투자입지 평가,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 유망한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
- 행정 등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민원 업무 대행
- 비자·관세·세무관련 11종의 민원 직접 처리
- 관련 행정당국이나 기관과의 업무 조율
- 투자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투자 옴부즈만 통해 해결

(3)기타 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

-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입지 지원,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현금 지원, 융자 지원, 시설 보조금,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각종 조례나 제도로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업무 연락처>

시 도	담당자		사무관	과 장	주 소
서울시	02-2171-2794 F. 2171-2799	김민숙	투자사업팀장 김수덕	투자유치담당관 신상철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부산시	051-888-3031 F. 888-4809	김영희	사무관 김병기	투자유치실장 김채수	611-735 부산 연제구 중앙로 2001
대구시	053-803-3471 F. 803-3309	변창재	투자유치1팀장 정화일	투자유치단장 김종찬	700-714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인천시	032-440-3842 F. 437-5379	김원상	사무관 김문성	국제협력관 최종윤	405-750 인천 남동구 시청앞길 25
광주시	062-613-4074 F. 613-4069	강인아	외국기업유치담당 정창균	투자유치기획단장 강정기	502-702 광주 서구 내방로 410
대전시	042-600-3666 F. 600-3669	채 현	투자유치담당 이희석	투자유치팀장 유세종	302-120 대전 서구 둔산2동 1420번지
울산시	052-229-3072 F. 229-3059	윤혜경	외자유치담당 서석광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680-701 울산 남구 신정동 646-4
경기도	031-249-2184 F. 249-2189	서경택	사무관 이훈재	투자진흥과장 김명선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원도	033-249-3433 F. 249-3409	김태진	사무관 김철래	기업유치과장 박천수	200-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충청북도	043-220-3234 F. 220-3219	홍성욱	외자유치부장 고세웅	투자유치팀장 권영동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
충청남도	042-220-3852 F. 220-3899	이건주	투자기획담당 이능호	투자유치담당관 이승곤	301-763 대전 중구 선화동
전라북도	063-280-3862 F. 280-2759	박연화	외자유치담당	투자유치과장 노홍석	560-761 전북 전주시 효자동 3가 1
전라남도	061-286-5133 F. 286-4746	서희정	외자유치담당 소영호	투자정책관 송영중	534-700 전남 무안군 상향면 남악리 1000
경상북도	053-950-2174 F. 950-2178	이상엽	사무관 이영화	투자유치팀장 김장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남도	055-211-3454 F. 211-3459	주소영	사무관 김경일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641-702 경남 창원시 대방로 1가
제주도	064-710-3372 F. 710-3369	진석빈	투자유치 1담당 이영철	투자유치과장 강산철	690-700 제주 제주시 문연로 2

2. 투자유치정책

가. 일 본

(1) 투자관계 법규

- 일본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활동 관련 제도개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해옴

연도	제도정비 내용
1997년	지주회사 해금
1999년	주식교환, 이전제도 도입
2001년	회사분할제도 도입 및 기업조직재편세제 정비
2003년	개정산업재생법 시행 ¹⁾
2006년	회사법 시행

- 2006년 5월부터 일본의 회사법제를 규정해온 상법(제2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회사법이 시행되어 회사설립이 용이하게함

- 주식회사 1천만엔, 유한회사 3백만엔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철폐되고 유사 상호권리 구제 및 발기설립의 경우 관련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가 폐지되어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 또한 과거 외국기업의 지점을 일본에 개설할 경우는 대표자 전원이 일본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개정이후는 최소 1명이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점개설이 가능함
- 유한회사제도와 주식회사제도로 구분되어오던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포함한 주식회사제도로 통합. 기관설계는 주식양도제한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 1명으로 요건을 충족함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 LLC)가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어 인재집약형 공동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활동의 축진이 기대됨

1)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자원 재활용계획 등을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추가

-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가 가능했던 과거의 합병대가가 현금과 신회사의 주식을 대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병이 유연화됨
- 2007년 5월부터는 합병 등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합병』 등도 가능해짐. 이와 같이 기업조직 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거나 지침을 마련하는 법률의 재정비가 일본의 FDI 촉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투자 인센티브

□ 중앙정부

- 일본의 경우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세제 제도는 없음
-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내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 연장하도록 되어있음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대내투자사업자(외자비율이 1/3초과인 자회사이며, 설립 8년 이내 기업 등의 조건 충족 필요)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10억 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 (거치 3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거치 3년) 등임
- 외국기업은 일본 정책 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대일엑세스 촉진사업(외자 1/3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투자 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융자비율은 50% 이상이 됨

□ 지방정부

- 투자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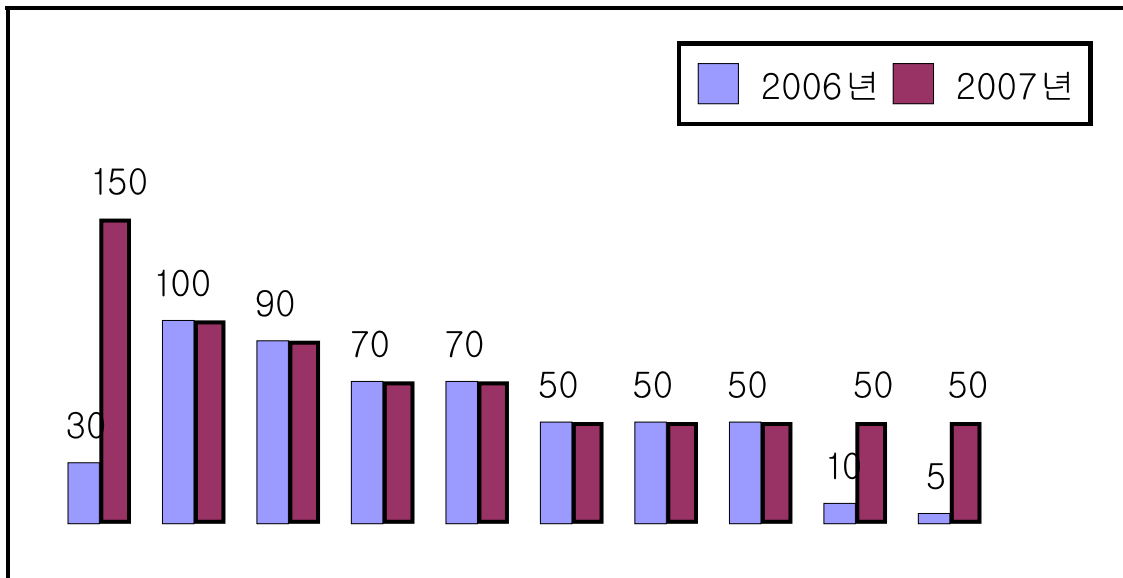
는 반면, 각 지방정부 별로 다소간의 자율적인 인센티브는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소세, 자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이자융자, 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지자체의 주요 외투기업 우대조치>

비과세	특정지역 내 공장건립시 토지보유세 비과세
세감면	생산설비 신/증설시 3년간 취득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감면
보조금	특정생산설비 및 연구소 신/증설시 고도기술자 1인당 10만엔 보조
융자	특정 생산설비 건축과 관련한 자금의 80%를 연 6% 이내로 융자

<지자체의 기업유치 보조금 상한선 (단위 : 억엔)>



(자료원 : 닛케이신문 2007.11.19)

-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키타큐슈, 고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가 대일투자유치 중점도시로 지정(13정령지정도시) 운영중임

(3) 최근의 정책 방향

- 일본 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노하우의 도입 등으로 인해 일본경제전체의 잠재 성장력을 향상
 -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종전의 해외투자진출 일변도였던 투자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5월 중 대일투자회의(본부장 겸 의장 고이즈미 수상)을 설치하여 투자대상처로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7년 출범한 후쿠다 수상체제하에서도 이어졌음
- 일본정부는 2006년 말의 대일직접투자잔고를 2001년에 비해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달성한 바 있으며 (2001년 말 6.6조 엔 → 2006년 말 12.8조 엔), 2006년 3월에 대일직접투자잔고의 GDP대비 비율을 2010년까지 5%정도로 두 배가 되도록 늘린다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 폭넓은 투자를 환영하고 있음²⁾
- 대일투자유식자회의 제언
- 1994년 대일투자회의 설치 이후, 일본정부는 두 번에 걸쳐 FDI의 배증계획을 내걸고 투자촉진을 유도해왔으나 국제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음

<타선진국과 비교한 일본의 대내투자규제의 운용상황>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법률	외환법	국방생산법	기업법	통화금융법전	대외무역결제법
규제 방식	사전신고방식	사후개입방식(임의신고방식)	사후개입방식(임의신고방식)	사전신고방식	사전신고방식
대상 자본	외자만 해당	외자만 해당	내외무차별	외자만 해당	외자만 해당
대상 거래	상장기업의 10% 이상 주식취득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영국기업의 합병, 인수	프랑스기업의 33%이상의 주식취득	기업의 25%이상의 주식취득
대상 업종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군사 전환용의 축연성이 높은 범용품	전 업종	전 업종	전략11산업(무기, 군민양용품, 테러대책, 암호통신, 경비 등)	전쟁무기, 암호시스템, 전차용 엔진

2) 2007년 12월말의 대일직접투자잔고는 약 15.1조엔(GDP대비 2.9%)로 2.3조엔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라는 과거 5년간 최고의 증가율임

	의 제조업, 전기, 가스, 방송, 통신 등				
심사 업종	국가안전, 공공 질서, 공중안전	국가안전보장	공공이익	공서양속, 공공 안전, 국가방위	중요한 안전보장 상의 이익
운용 상황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 과거 3년간에 763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명령은 1건 뿐임	법률상 고려요소를 설정 ³⁾ 연간 100건 정도 를 심사. 일부사 례에서 당사자와 리스크경감합의 를 체결 투자금지는 1990 년 중국항공기술 수출입공사의 사 례뿐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 2003년6월이후 6 건의 사례에 개 입 개입후 당사자와 합의한 투자조건 의 내용을 공표	법령상 이하기준 을 설정 ①사업/연구개발 능력의 유지②공 급에 관한 기밀유 지③방위조달계약 의 이행확보 운영상황은 공표 안함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 운용상황은 공표 안함

- 대일 FDI의 정체요인 및 그 구조적 배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내각부 경제재정정책담당장관하에 대일투자유식자회가 2008년 1월에 발족, 집중적인 검토 결과 FDI확대의 구체적인 처방전으로서 대일직접투자의 근본적 확대를 위한 5가지 제언을 정리, 지난 5월20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함. 이로 인해 내각부를 중심으로 “대일직접투자프로그램”을 개정, 향후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5가지 제언>

1. M&A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정비
대일 직접투자의 중요한 수단인 M&A의 원활화를 위해 아래 항목을 포함한 폭넓은 검토를 통한 M&A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함 - 인수규정의 정리, 명확화 (인수방위책이 투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규정 정리, 검토) - 국경을 초월한 M&A원활화를 위한 검토 촉진 (다양한 M&A 기법에 대응한 제도 및 세제 검토) - 외국기업의 M&A에 대응한 알레르기 불식 (환영메시지 발신, 사업재생 등을 중심으로 한 M&A성공사례의 수집, 소개)
2. 외자규제의 자세를 포괄적으로 검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함. 이때 내외무차별원칙의 예외로서 외자규제를 필요로 하는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본의 개방된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야 함 - 일본의 외자규제의 자세에 대해 2008년 이내에 정부가 포괄적으로 검토
3. 섹터별 중점전략 수립

3) ①국내 방위생산기반에의 영향, ②외국으로의 기술유출 효과, ③국제적인 기술우위예의 영향, ④주요에너지자산을 포함한 중요기간시설에의 영향, ⑤중요기간기술로의 영향, ⑥에너지의 중요자원조달의 장기전망에의 영향, ⑦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소

향후 일본경제의 활성화, 국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바이오·의료부분에 대한 중점 전략을 수립 - 의약품에 비해 대처가 늦은 의료기기분야에 초점을 맞춘 액션플랜을 확립해야만 함 - 의료기기 심사인원의 3배 증강(35명 → 100명) 등에 따른 “디바이스릭 Device lag (의료기기도입시기의 차이)”의 해소 등 ※ 일본의 의료기기 승인 기간은 미국에 비교해 1년 이상(14개월) 길며 일본에서의 승인신청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음 ※ 의료기기의 심사원수는 미국의 377명에 비해 일본은 35명임 - 향후도 중점섹터를 선정하여 액션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책정
4. 사업비용의 절감과 제도의 투명성 향상 글로벌 경쟁속에서 해외기업이나 투자가가 대일직접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나 제도개혁을 하여 일본의 비즈니스경비를 절감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율(표면세율) 인하 - 노액션레터제도 및 세금의 문서회답수준의 근본적 개선 - 규제신설시의 평가프로세스의 강화, 행정부 하의 조사 - 독점금지법의 심판수준 등의 재검토 - 관공업의 민간활력 활용 추진
5. 외자유치에 의한 지역활성화와 외자환영 분위기 조성 외자유치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자본이 활동하기 쉬운 투자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외자환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광역경제권에서의 전략적인 외자유치 - 민간출신자를 활용한 외자유치활동 - 외국인이 주거하기 편한 생활환경만들기 (시촌의 대처사례의 수집, 소개) - 외자에 의한 M&A를 활용,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원활화 - 대일투자환영 분위기 조성

(자료원 : 내각부 대일투자유식자회의)

□ 2008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 2008년 6월에 마무리된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에서 대일투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하에 “대일직접투자 가속 프로그램”을 개정, 대일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5가지 제언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함

□ 외자 배타적 분위기

-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확대 정책과는 역행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외투기업인들은 아직 실제로 외국투자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이하 내용은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기사원문) Power struggles

May 29th 2008 | TOKYO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생략)

In recent months, corporate Japan has done an excellent job of fending off foreign investors. Peter Mandelson, the European Union's trade commissioner, calls it the most closed market in the industrialized world. Rare victories do take place: on May 29th a shareholder vote led by Steel Partners, an American activist investor, prompted the removal of six directors and the boss of Aderans, a wigmaker. But last year Steel's attempt to acquire Bull-Dog Sauce, a venerated condiment brand, was rebuffed. Bull-Dog's poison-pill defence was successfully defended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Steel has since quietly sold its stake in Bull-Dog. Then there is the case of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TCI), a British hedge fund. In mid-May, the trade and finance ministries blocked TCI from doubling its 9.9% stake in J-Power, a big electrical utility. Although the ministries put their decision down to unspecified national-security concerns, it looks as if they feared that TCI would siphon off J-Power's cash as dividends and dash away, leaving the company ill-prepared to pay for building a nuclear power-plant and investing in its network.

.
. .
.

More than a quarter of Japanese shares are owned by foreigners, who account for more than 60% of the trading. Meanwhile, the stockmarket value of more than half the firms on the market's first tier is below their book value. In other words, they are worth more broken up and sold than they are as going concerns.

.
. .
.

Foreigners have been calling for change for years, to little effect. But lately there have also been calls for change within Japan. In May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an influential group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put forward a series of proposals, the boldness of which is a strong rebuke to the insular ministries and their managers. The first reform, devised by a group on foreign direct-investment (FDI) associated with the council, proposed making takeovers of Japanese firms easier, to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The group also recommended reducing the tax burden. Japan's corporate-tax rate, at almost 40%, is one of the highest among rich countries.

Second, the council called upon the Tokyo Stock Exchange to establish new rules to discourage anti-takeover defences. Third, it proposed dividing Japan's \$1.44 trillion public-pension scheme, the world's largest, into smaller funds and placing them in the hands of external fund-managers rather than retired bureaucrats. The idea is to revitalise the stockmarket, increase accountability and diversify risk, says Takatoshi Ito, an economist at Tokyo University who is on the council.

.
.
 .

In May Nikko Asset Management said it would oppose reappointing directors in cases where ROE falls below the industry average and the company does not present a plan to fix things. Daiwa has issued guidelines advising big firms not to list subsidiaries without placing outside directors on their boards, and Nomura and Nissay have developed guidelines covering ROE and takeover defences respectively. These moves are modest by Western standards, but in Japan they represent a big and welcome shift.

요약1) 불독소스가 적대적인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
동시킨 인수방위책에 대해 2007년 8월 최고재판소는 인수자 이외의
대부분의 주주가 방위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령
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요약2) 영국 투자펀드 TCI 가 2008년 1월 전원개발(J파워)의 출자비율을
9.9%에서 20%로 올릴 의향을 표명하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국
가안전에 관련된 직접투자라며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 투자증
지를 권고, 결국 중지명령까지 내림

요약3) 호주의 투자은행 맥쿼리 그룹이 일본공항빌딩(하네다공항 운영회
사)에 20% 정도 출자한 것을 계기로, 공항정비법의 개정안에 있어
공항관련 회사로의 외자 출자 비율을 3분의 1미만으로 하는 외자규
제를 도입하고자 함

나. 한 국

(1) 투자관계 법규

□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규제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음

○ 외국인투자의 보호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외송금 보장

-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 보장

○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동 조항의 적용 배제

○ 내국민 대우

-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적용 배제

-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관련 법률 중 감면관련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금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제외업종), 1,083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음(제한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기타금융시장관리업,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투자 허용.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 제한업종(2008.2.29기준)>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육우 사육업(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12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 개 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 및 배전업(3512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외국투자가 의결권주식 소유비율<내국인 제1주주 비율>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전기사업법 제82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
육류 도매업(46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 허용대상 :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정기 항공운송업(51100) 부정기 항공운송업(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라디오 방송업(60100)	라디오 방송업(60100)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 개 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 사용 사업은 미개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 업을 지칭
유선방송업(60222)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미개방)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 비 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유선통신업(61210)	- 외국인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하며, DR등 의결 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 래법 제2조 제20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법인 -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무선통신업(61220)	
위성통신업(61230)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61299)	
뉴스 제공업(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국내은행(64121)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2)투자 인센티브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수반되는 경제
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국내기업에 비해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
국인 투자기업의 추가 발생비용은 덜어주는 효과가 있음
- ☐ 2007년부터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효과 높은 인센
티브 확충을 위하여 Invest KOREA가 현금지원에 있어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기획하여 제시 할 수 있게 하였음

○ 조세감면제도

-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첨단기술의 이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음. 동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9가지 범주 하에 들어감

- ① 산업지원서비스⁴⁾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⁵⁾
- ② 외국인투자지역(FIZ, Foreign investment zone)⁶⁾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③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⁷⁾
-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 ⑤ 제주투자진흥기구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 ⑥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⑦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⑧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 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9)>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 고도기술 : 없음 · 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 제조업 : 1천만\$ · 관광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 4)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5)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6)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 일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지역의 명칭·위치·면적·개발·관리방법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 7) US\$ 1천만 이상의 제조업, US\$ 1천만 이상의 관광업, US\$ 5백만 이상의 물류업, US\$ 500만 이상의 석사 10명이상 고용한 R&D시설이 공장 및 관련시설을 신증설 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	--	--	---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물품	·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 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국세 및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9)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 생명공학 산업 · 정보통신 산업 · 첨단기술 및 제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 1천만\$ 이상 투자 -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석도 및 궤도시설 운영, 대체에너지 전기 생산 사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제조업 - 1천만\$ 이상 투자, 상시고용규모 100명 이상 · 물류 등 - 5백만\$ 이상 투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FDI 1천만\$ 이상 ·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0, 11)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물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수입 신고를 완료한 물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자본재			· 3년 내 수입신고된 것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현금지원

- 현금지원제도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아일랜드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투자 유인책임

<현금지원제도 개요>

구분	세부사항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으로서 · FDI US\$1천만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 FDI US\$1천만 이상인 부품·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 · FDI US\$5천만 이상이며, 석사급 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R&D 연구시설 신증설
용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평가항목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지원금액	· 투자자와 정부간 협상을 거쳐 금액 및 세부조건이 결정됨 (외국인 투자금액의 5%-15%)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음
보조금지급에	·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의무고용인원을 준수

따른 의무	·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신청(서면 또는 구두) ·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 협상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현금지원계약 체결 * 신청서 제출 후 60일 내 결정, 30일 내 연기 가능
기타 사항	· 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과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제도 중 에서 신청인이 택일 가능

○ 재정지원

- 외투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입지를 위한 비용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입지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등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 대부, 매각 등을 하여 입지를 지원. 이때 임대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음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 증설투자 : 다음 중 택일
(a)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b)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것의 25% 범위 내
(이 경우 전체금액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25% 이상이어야 함)

<재정지원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대 용지 지원	부지매입	·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수도권 (국가 40%, 지자체 60%) 비수도권 (국가 75%, 지자체 25%)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로 연장가능, 50년 범위 내에서 기간 갱신가능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1백만불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 제조업 (5백만불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100%범위 내에서 국유재산관리청,		

		지자체의 별도 조례에 따름
분양가 차액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시 차액보조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기타 보조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외국인투자 지역 인프라 조성 지원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생활환경개 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 기타지원

- 지식경제부는 세계적인 R&D Center의 유치 및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외국 R&D 유치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Invest KOREA를 통하여 실시되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구분	주요 내용
신규 설립 또는 확대, 투자계획이 있는 기존 R&D센터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의 2년 이상 채용시 인건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R&D 분야 교육요원의 체제비 및 교육훈련 관련비용의 최대 50% 까지 지원

IV. 투자환경 비교

1. 개 요

■ 일 본

- ☐ 일본의 대외투자유치 활동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됨. 지역사회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를 목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함
- ☐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며 자본거래도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
- ☐ 산업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으며 기술인력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엄청난 지가, 인건비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의 대일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한 국

- ☐ 한국의 대외투자유치 활동은 외환위기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투자 양적확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국내산업연관,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질적인 투자 확대를 중요시 함
- ☐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2007년)과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재정지원 등 투자유치인센티브를 확대함(2003~2007년), 현금지원제 도입(2003년)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함
- ☐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 중점투자 유치분야는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관광인프라, R&D등 임
- ☐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산업발전 사이클상 성숙단계에 있어

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경제활동이 대부분 수도권 및 일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불균형적 발전형태가 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경제체질이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외자유치 등을 통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더욱 요청됨
- 이 밖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한 과세 논란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반감정서가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수익의 회수에 관한 확신,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영환경

(1) 세무환경

■ 일 본

□ 외투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괄

- 일본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광역지자체(47개의 도도부현)의 도도부현세와 기초지자체세로 이루어지게 됨
- 국세의 부과 및 징수는 재무성의 외국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국세청은 1개의 중앙사무국, 12개의 국세국 및 524개의 세무서로 구성됨
- 조세불복에 대한 이의접수는 국세불복심판소에서 담당함
- 지자체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세무서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외투기업(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
 -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은, 그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되나 다국적기업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진출 형태에 따라 세제가 불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외국에서 획득한 이익이 포함된 경우로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가 되어 있을 때에는, 소득 원천지 국가와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일본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 규정이 마련됨
 -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만을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원천징수 또는 신고 납부

-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수속 또는 신고에 의한 납부수속에 의해 세액이 산정되고 이를 납부함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다름. 또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하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음

- ① 공사채의 이자, 국내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
- ② 국내 업무에 관련된 대부금의 이자
- ③ 내국법인의 주식, 증권 투자 신탁의 배당
- ④ 국내 부동산, 기타 유사 재산의 사용 대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
- ⑤ 급료,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보수로 국내의 역무 제공에 기인하는 것
- ⑥ 거주자로서의 역무 제공에 기인하는 퇴직 수당 또는 연금
- ⑦ 국내에서의 자유직업 역무의 대가
- ⑧ 연예인, 자유직업자 또는 기술자 등의 인적 역무 제공 사업의 대가
- ⑨ 국내 업무에 관련된 특허권, 노하우, 저작권 등의 사용료 또는 양도 대가
- ⑩ 국내 업무에 관련된 기계 장치의 사용료
- ⑪ 국내 광고 선전의 상금
- ⑫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연 금
- ⑬ 국내에서 발행되는 할인채의 상환 차익
- ⑭ 일정한 이자 소득과 유사한 소득
- ⑮ 국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일정한 것
- ⑯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
- ⑰ 위의 조항 이외에 국내 자산의 운용, 보유, 양도에 의한 일정 소득
- ⑱ 사업 소득
- ⑲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 분배

- 또한 조세조약에는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에 대한 정의, 소득의 원천지 및 과세방법에 대해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 과세와 세율

- 법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는, 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이하 법인세 등)가 있으며, 법인주민세,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범위, 과세 소득의 산정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균등분할 과세가 이루어짐. 또한 법인 사업세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외형 표준과세가 있음
-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며 이 밖의 법인세로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퇴직 연금 등의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균등분할)은 다음과 같음(도쿄도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예시).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음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과세 소득금액의 구분	400만엔 이하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800만엔 초과
법인세	22.0%	22.0%	30%
법인주민세			
(1)도도부현 주민세	1.10%	1.10%	1.50%
(2)시구청촌 주민세	2.70%	2.70%	3.69%
사업세	5.00%	7.30%	9.60%
종합세율	30.80%	33.10%	44.79%
실효세율	29.33%	30.85%	40.87%

*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경우를 예시. 단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함.

- 자본금은 1억엔 이하
- 법인세액은 연 1,000만엔 이하, 또한, 소득금액은 연 2,500만엔 이하

○ 2 이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사업소 소재

<법인주민세 균등분할 과세분>

자본 등의 금액		종업원 수	균등분할
¥5,000,000,000 초과	-	50인 초과	¥3,80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290,000
¥5,000,000,000 초과	-	50인 이하	¥1,21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95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53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29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0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이하	¥180,000
-	¥10,000,000 이하	50인 초과	¥140,000
-	¥10,000,000 이하	50인 이하	¥70,000

○ 일본법인의 설립, 일본지점 등의 개설과 세무 신고

-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 일본법인을 설립 또는 일본지점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그 설치와 관련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또는 지점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장소 혹은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경우에도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참조 1>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일본 국내에서 건설, 설치, 조립, 그 밖의 작업 또는 작업 지휘 감독의 역무를 1년 이상 제공한 경우, 이들 건설, 작업 등의 현장
- 아래와 같은 대리인
 -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것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자
 -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고객의 일반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자산으로 보관하고, 또한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인도해 주는 자
 - 오직 또는 주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해 상습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그 밖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자

- 주재원 사무소를 통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주재원 사무소가 광고 선전, 정보 제공, 시장조사, 기초적 연구, 그 밖에 그 법인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일본 사무소·사업소가 자산구입 업무에만 그 장소를 사용할 경우, 또는 자산보관 업무에만 그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됨.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앞서 언급한 「국내 원천소득」 중 각각 정해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의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되며, 아래 구분 ㄷ의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세는 부과되지 않음

<참조 2> 외국법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상태와 과세 소득과의 관계

- | |
|---|
| ㄱ. 일본 국내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등 사업을 하는 일정한 장소를 소유한 외국법인
⇒ 모든 국내 원천소득 |
| ㄴ. 전술한 <참조 1>의 ㄱ 또는 ㄴ에서 규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 사업소득 및 「국내 원천소득」 중 ④⑧⑮⑰에 예시된 소득 및 그 밖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그 국내 사업에 귀속되는 것 |
| ㄷ. 위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
○ 전술한 「국내 원천소득」 중 ④⑧⑮⑰에 예시된 소득
* 위의 ㄱ 및 ㄴ에 해당하는 장소, 현장, 대리인 등은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로 불림 |

○ 법인 과세 소득 산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 표준인 소득금액은, 일반

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기업 이익에 소요 세무 조정을 해서 산정됨

- 아래 예시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경비는 공제할 수 있음
-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되는 일본 국내 원천소득 산정상 공제해야 할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장소에 제한이 없으나, 국외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상 공제하기 위해서 배부(配賦)할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배부는 독립기업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함

<참조 3> 원가, 비용의 공제에 제한이 있는 항목의 예

- 법인세 등 및 벌과금
- 기부금의 손해금 산입(算入) 한도 초과액
- 교제비의 손해금 산입 한도 초과액
- 각종 준비금의 이월액
- 감가상각 자산 및 순연 자산의 상각 한도 초과액
- 자산의 평가 감소
- 임원 급여, 임원 퇴직 급여

○ 본국으로의 송금

- 외국법인의 지점이 행하는 본점(본국)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즉, 원칙적으로 그 송금에 대해서는 지불자인 지점에서 그 지불을 경비로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취자인 본점에서도 소득으로서 취급되지 않음
- 일본법인이 모회사(본국)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가, 경비의 지불, 이익의 배당, 또는 대부(혹은 대부금의 변제)로 처리됨. 그 내용 중 어떤 것은 지불자인 일본법인에서 경비로서 공제되고, 한편 모회사에서 그 내용 중 일정한 것은 수취자인 모회사에서 소득으로서 인식됨. 모회사에서 소득으로 취급되는 특정 지불(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용료의 지불)에 대해서는, 지불 시 원천소득세의 과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같은 계열 회사의 유보금 과세

- 같은 계열 회사인 일본법인 중 몇몇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유보금 과세가 추가로 적용됨
- 유보금 과세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에서 유보 공제액을 공제해서 산출되는 과세 유보금액에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특별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3,0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 연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연 1억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임

○ 결손금 처리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액은 그 후 7년간 이월됨
- 결손금 이월제도는 결손이 생긴 사업연도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후 확정 신고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또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하고, 소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인정됨
- 단, 현재 중소기업자의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의 결손금액에 해당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급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업 조직재편 세제

- 법인이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조직재편)에 의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
- 기업 그룹 내의 조직재편 혹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직재편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직재편으로써 그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있음

○ 세무신고와 납부

① 확정신고와 납부

-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에 대해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확정신고서에 기재하는 소득금액이나 세액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된 결산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함
- 계산된 세액은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납부해야 할 확정 세액의 계산상, 미리 납부된 중간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함

② 중간신고와 납부

-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초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함

③ 청색신고

- 법인의 세무신고서는 백색과 청색으로 구별되는데, 법인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청색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는 각종 세무상의 특전이 주어짐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함.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일본에 새로 지점을 설치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설립(설치)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설치)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

및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가 있음. 소득율, 부가가치율 및 자본율 각각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음

<표준세율표>

소득율	연 400만엔 이하	3.8%
	연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5.5%
	연 800만엔 초과	7.2%
부가가치율		0.48%
자본율		0.20%

* 세 곳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사업소가 있을 경우, 소득율의 표준세율은 일률적으로 7.2%가 됨.

□ 기타 주요세금

○ 원천소득세

소득세는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신고소득세는 개인에 대하여 과세됨에 반해, 원천소득세는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세됨. 원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그 소득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음

① 원천징수와 납부 수속

-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을 지불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지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함. 단, 지불자가 일본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천소득세는 지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함
-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급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그 선택에 따라 연 2회(7월 10일까지와 1월 10일(특례 선택의 경우에는 20일)까지)에 각각 6개월분의 원천소득세를 종합해서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함

② 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거주자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불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이자(특정 할인채의 상환 차익을 포함)
- 배당
- 급여, 임금, 상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
- 퇴직수당
- 피고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일정한 보수, 요금 등

③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내국법인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불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이자(특정 할인채의 상환 차익을 포함)
- 배당
- 마주(馬主)가 받는 경마 상금
-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⁸⁾

④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술한 「국내원천소득」의 ①~⑫ 및 ⑮에 예시한 소득이 지불되는 경우로, 그 지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지불되는 경우라도 그 지불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천소득세가 과세됨
- 일정한 소득(「국내원천소득」의 ②④⑦⑧⑨⑩⑪⑫⑮에 예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수령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소득이 그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고, 사업 소득으로서 합산되어 신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취지의 세무증명서를 지불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제됨

○ 조세조약

- 일본은 소득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회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 규정은 일본 국내법

8) 2007년 12월 31이전에 지불해야 할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는 익명조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에 우선해서 적용됨

- 조약 체결 상대국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일본의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국내법에서 과세 소득으로 정해져 있는 각종 소득의 소득 원천지가 수정될 수 있음. 또한 각종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인 일본에서의 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조세조약 네트워크>

아르메니아 1)a	덴마크 3	이스라엘 3	필리핀 2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3	이집트	이탈리아	폴란드	타지키스탄 1)a
오스트리아	피지 1)d	키르기스스탄 1)a	한국	태국
아제르바이잔 1)a	핀란드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영국
방글라데시	프랑스 2	말레이시아	러시아 1)a	미국
벨라루스 1)a	조지아 1)a	멕시코	싱가포르	터키
벨기에	독일	몰도바 1)a	슬로바키아 1)b	투르크메니스탄 1)a
브라질	헝가리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1)a
불가리아	인도	뉴질랜드 3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1)a
캐나다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1)c	아일랜드	파키스탄 3	스웨덴	잠비아
체코 공화국 1)b				

- 1) a 구소련과의 조약이 승계되어 있음
b 구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조약이 승계되어 있음
c 홍콩,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음
d 피지에는 영국과의 원조약이 승계되어 있음
- 2) 프랑스와의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2007년 1월에, 필리핀과의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에 서명이 이루어져 있어,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발효하게 됨
- 3)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UAE, 쿠웨이트 및 네덜란드와 조약 교섭중임(2007년 4월 기준)

○ 기타 주요 세금

- 기타 소득,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 소비 등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 중 많은 사업자에게 공통되는 것으로는 고정자산세(상각자산세), 도시계획세가 있음. 고정자산세(상각자산세)는 토지·건물 및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각 연도 1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과세되며, 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세의 부가세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0.3%의 세율

로 과세됨

-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 사업소세가 과세됨. 서울은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600엔, 급여 총액의 0.25%임
- 부동산이나 회사의 등기, 특정한 영업면허 등을 받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규정되어 있는 문서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인지세가 있다. 그 외에도 증여세나 상속세, 각종 목적세가 있음

○ 기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제

- 외국세액 공제 : 소득에 대한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세액을 일본세액으로부터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의 일정한 외국 자회사가 부과된 외국세액을 그 내국법인의 일본세액으로부터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함
- 이전가격 세제 : 법인이 국외에 있는 모회사 등 관련 회사와의 거래가격을 일반적인 가격(독립기업 간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가가 독립기업 간 가격과 다른 것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적어질 경우에는, 그 거래가 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정함
- 조세회피지역 대책 세제 : 내국법인이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국 자회사의 유보소득 중 그 지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함
- 과소자본 세제 : 법인이 일정한 국외의 지배 주주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3배(혹은 이것을 대신하는 합리적인 비율)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부채 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상 공제할 수 없음

■ 한 국

□ 신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

- 신정부는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발표(기획재정부 08년 6월)

<법인세 인하>

현행 법인세율	개정 법인세율
· 과표 1억원 초과: 25%	·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 과표 1억원 이하: 13%	·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 외투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괄

- 한국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함. 다음과 같은 15세목의 국세와 16세목의 지방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의 3가지가 있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하는 과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복되어 과세되는 이중과세임

-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X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써 이러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 분리과세 되는 부분,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800,000원 + 1,000만원 초과액 X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900,000원 + 4,000만원 초과액 X 26%
8,800만원 초과	16,300,000원 + 8,000만원 초과액 X 35%

-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임.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 중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양도세율>

구 분			세 율 (07.1.1부터)
부동산 등	부동산에 관한권리	미등기 자산	70%
		등기자산 중 3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60%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
		등기자산 중 1년미만 보유분	50%
		등기자산 중 1년이상 2년미만 보유분	40%
		등기자산 중 2년이상 보유분	누진세율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60%
	기타 자산		위 이외의 기타자산
일반 주식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	대주주의 1년미만 보유한 주식	30%
		위 이외의 주식	20%
	중소기업의 주식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1,000 만원 이하	9%
1,000 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0,000 원 + 1,000 만원 초과액 X 18%
4,000 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0,000 원 + 4,000 만원 초과액 X 27%
8,000 만원 초과	17,100,000 원 + 8,000 만원 초과액 X 36%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임.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함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내 용	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 모두 이행	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등의 의무가 면제되며 납부세액

		을 간편하게 계산가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
거래징수	세액을 별도로 징수	대가에 포함하여 영수
세율	10%	10%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 (매입세액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세액공제 및 환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환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시는 없는 것으로 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적용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며 미등록가산세는 0.5%임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없이 1년을 1, 2기로 나누어 신고대상기간을 구분하며 기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 제1기분 : 1월1일 ~ 3월31일 · 제2기분 : 7월1일 ~ 9월30일	· 각 예정신고 기간완료 25일 이내 · 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기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
확정신고	· 제1기분 : 1월1일 ~ 6월30일 · 제2기분 : 7월1일 ~ 12월31일 * 예정신고 납부분 제외	·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 단,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분으로 기신고한 내용 제외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영세율제도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면세제도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남아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음

<영세율 및 면세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영 세 율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면 세	· 서민관련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 근로 유사 인적용역: 인적용역(연예인, 작곡가 등) · 면세된 재화의 수입 · 기타 과세 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함.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단,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양도가 인정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0.5%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5%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3%

-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
토지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0.2%
		5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	
	분리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7% 과세표준액의 4% 과세표준액의 0.2%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 과세표준액의 0.5% 과세표준액의 0.25%
주택	4,000만원 이하 4,000만-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별장		0.15% 0.03% 0.05% 0.4%
선박	고급선박 기타선박		과세표준액의 5% 과세표준액의 0.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0.25%의 50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도시형 공장용 건축물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5배 중과함

※단, 다음과 같이 국가와 용도 구분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재산세 비과세대상>

구분	적용대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용도구분 에 의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보안립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

-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누어지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km² 이하인 경우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

인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면제됨.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 징수함. 사업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사업소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당해 월급여의 총액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투기업과 내국법인과 차이는 없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과 같은 법인세율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 적용
- 특정 지역 및 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세휴일제도를 적용함(5년 100% 후 2년 50%, 또는 3년 100%후 2년 50%)

(2) 입지환경

■ 일 본

□ 입지비용

- 국토교통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지가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 저소득자대상 고금리 주택융자의 영향 등이 배경으로 분석됨
- 도쿄의 마루노우치 등 브랜드력이 있는 도심부의 상업지는 여전히 왕성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가가 상승한 경우도 있으나, 기타 지역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혹은 하락함

- 일본의 2008년 도도부현지가조사에 따른 용도별 평균지가는 아래 표를 참조바람

<도도부현 평균가격표 (단위 : 엔/㎡)>

	주택지		상업지		준공업지		공업지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도쿄	354,100	360,500	1,657,300	1,785,000	394,400	402,400	224,000	231,000
아이치	105,600	108,000	296,300	320,200	93,700	94,800	54,100	55,100
오사카	163,600	165,300	526,100	572,100	146,500	147,600	91,900	93,300
후쿠오카	50,500	49,900	264,800	277,200	68,400	67,000	21,200	20,900

(자료원 : 국토교통성 2008년 도도부현지가조사)

- 사무실 설치시 도심 임대료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많음. 참고로 아래는 도쿄, 오사카의 중심지 임대료(3.3㎡당 가격) 현황임

	지 역	월 임대료 (천 엔)	보증금 (천 엔)
도쿄	마루노우치, 오테마치 (금융중심지)	38-45	480-693
	가스미가세키 (행정중심지)	26-34	312-408
	교바시, 니혼바시 (상업중심지)	22-27	264-324
	니시신쥬쿠 (부도심)	17	204
오사카	우메다	9-13	80-122
	미도스지혼마치	6-30	60-300

☐ 인프라 환경

○ 산업인프라

- 일본의 전력, 용수, 통신, 물류 등 산업인프라는 종전 이후 수십년에 걸쳐 정비되어 왔으며 현재는 서서히 노후된 정비를 재점검하는 단계에 있음
- 산업인프라 조성의 주체가 민간으로 이전, 혹은 공민 협력체제로 전환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일본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있어서는 세계 주요 23개국 중 ICT선진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총무성이 발표한 국제비교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브로드밴드요금, 광파이버 비율 등에서 세계 1위. 참고로, 한국은 세계 2위이나 브로드밴드속도, 3G휴대폰비율, 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는 1위를 차지함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에 비해 대내직접투자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인건비 및 물류, 전력 등의 산업인프라가 높은 가격구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최근 JETRO에서 실시한 구미아시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조사⁹⁾나 올해 실시한 외투기업 의식조사¹⁰⁾에 따르면, 문제시되던 높은 가격구조에 대한 문제는 착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임. 단 인재확보, 제품요구수준의 높음을 일본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늘어남
- 일본의 지역입지환경에 관한 정보는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 의해 발신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네트워크도 정비되어 있음

· 지역입지환경에 관한 정보는 재단법인 일본입지센터의 전국산업용지가이드¹¹⁾가 개설되어 정보를 제공함

○ 공장입지 동향

- 2007년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공장입지건수는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자사 기존공장 폐지와는 무관한 신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임
- 업종별로는 금속제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목됨

<지역별 공장입지건수 상위 3지역>

입지건수			
1위	칸토 내륙	전년대비 60건 증가	증감율 25.2%
2위	토카이	전년대비 19건 증가	증감율 7.7%

9)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209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뷰. 19개 항목으로 구성. 일본과 중국이 각각 27%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조사됨

10) 2008년 3월에 JETRO에서 실시한 대일직접투자에 관한 외투기업 의식조사

11) 홈페이지 정보 www.jilc.or.jp

3위	미나미 토호쿠	전년대비 55건 증가	증감율 32.7%
입지면적			
1위	칸토 내륙	전년대비 134 ha 증가	증감율 41.1%
2위	토카이	전년대비 49 ha 증가	증감율 - 11.4%
3위	키타큐슈	전년대비 103 ha 증가	증감율 72.5%

(자료원 : 경제산업성)

<도도부현별 상위지역>

입지건수			
1위	효고현	전년대비 35건 증가	증감율 43.8%
2위	군마현	전년대비 16건 증가	증감율 16.8%
3위	시즈오카현	전년대비 17건 증가	증감율 20.0%
입지면적			
1위	이바라기현	전년대비 59 ha 증가	증감율 45.9%
2위	에히메현	전년대비 112 ha 증가	증감율 888.2%
3위	군마현	전년대비 50 ha 증가	증감율 68.4%

(자료원 : 경제산업성)

<공장입지 업종별 순위>

1위	일반기계	320건	전년대비 68건 증가	증감율 27.0%
2위	금속제품	276건	전년대비 93건 증가	증감율 50.8%
3위	식료품	176건	전년대비 21건 감소	증감율 10.7%
3위	우송용기계	153건	전년대비 7건 감소	증감율 4.4%

(자료원 : 경제산업성)

□ 기타

- 각 지방 산업단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키타큐슈시 히비키나다 도부 공업단지 (響灘東部工業団地)

- 소재지: 1, Hibiki-Cho, Wakamatsu-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5,982,735㎡
- 조성주체: 키타큐슈시
- 공단성격: 키타큐슈시 북쪽에 위치한 해변매립 공업단지이며 도시계획법, 항만법에 의거 임해공업 전용지역임

- 입주비용: 분양가격 26,500엔/㎡.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지불해야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면적 5,982,735㎡ 중 미분양 1,781,224㎡
- 교통: (철도) 신간센 코쿠라역까지 12km, JP 와카마츠역까지 4km
(공항) 후쿠오카공항까지 약 75km, 기타큐슈공항까지 약 23km(약 30분)
- 전력: 큐슈전력의 보통고압(6KV), 특별고압(66KV)이 가설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응
- 용수: 기타큐슈시 운영 공공용 수도로 최대 공급량 54,210㎡/일 급수
- 통신: 전화, 컴퓨터통신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노동력 확보용이
- 임금수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 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제조업, 유통업, 일부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한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조업 개시해야 함
- 우대조치: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는 6,000엔)
(고용장려금) 공장 신증설시 종업원 1인당 30만 엔
(자금융자) 공장 신증설시 1개사당 5억 엔

히로시마 미요시공업단지 (三次工業団地)

- 소재지: Matsugasako, Higashi-Sakaya-Cho, Miyoshi-Shi, Hiroshima-Ken
- 부지면적: 756,000㎡
- 조성주체: 히로시마현
- 공단성격: 추고쿠내륙의 공업지역으로 1983년 4월 정비가 완료된 제조업 중심의 공단으로 인프라정비가 우수함
- 입주비용: 분양가격 14,770엔/㎡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 면적 756,000㎡ 중 극히 일부만 미분양
- 교통: (항만) 히로시마항까지 60km
(철도) 신간센 미요시역까지 4km
(공항) 히로시마공항까지 60km
(도로) 추고쿠자동차도로 미요시 IC까지 2km
- 전력: 보통고압전력(6,600V)이 가설되어 있음
- 용수: 1,200㎡/일 급수가능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주변인구는 약 10만명으로 노동력 확보 용이
- 임금수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 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환경보호규칙에 의거 각서제출
- 우대조치: (조성금) 히로시마현의 공장 및 시험연구시설에 해당할 경우
1억 엔의 조성금 지원
(자금융자) 공장 신증설 시 1개사당 3억 엔

효고현 호쿠세츠산다 테크노파크

- 소재지: 3-1, Suzukakedai, Sanda-Shi, Hyogo-Ken
- 부지면적: 989,000m²
- 조성주체: 주택, 도시정비공단
- 공단성격: 코오베시 중심부에 북방 27km 떨어진 한신도시권에 인접하는 공업단지로 표고 약 200m의 구릉지에 조성된 제조업중심의 공단. 1971년 공단으로 조성됨
- 입주비용: 분양가격 120,000엔/m².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지불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 면적 989,000m²
- 교통: (항만) 고베항까지 20km
(철도) JR후쿠지야마선 신산다역까지 1km
(공항) 칸사이공항까지 60km
(도로) 마이즈루자동차도로 미타니시 IC까지 1km
- 전력: 보통고압, 특별고압 등 기업입지에 따라 대응가능
- 용수: 공업용수 5,000m³/일 급수, 지하수는 공해방지협정에 의거 사용금지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노동력확보는 용이
- 임금수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6 만엔/월

■ 한 국

□ 입지비용

○ 사무실 임대료

- 서울을 포함한 7대도시의 사무공간으로 주로 이용되는 오피스빌딩 3층 이상 월 평균임대료는 14.3천원/㎡으로 전반기 대비 0.4천원/㎡ 상승한 것으로서 2004년 이후부터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
- 매장용 빌딩의 경우 1층 기준 임대료가 37.9천원/㎡으로 조사되어 전반기 대비 0.7천원/㎡ 증가

<7대도시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빌딩 임대료 수준>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오피스빌딩 (3층이상)	2007	14.3	17.3	6.8	6.1	7.9	4.6	4.7	4.9
	2006	13.9	17.0	6.9	6.0	8.1	4.4	4.5	
	증감폭	-0.4	+0.3	-0.1	+0.1	-0.2	+0.2	+0.2	-
매장용빌딩 (1층기준)	2007	37.9	51	30.7	23.0	22.6	23.5	27.0	16.1
	2006	37.2	50.1	29.7	22.5	22.6	23.2	27.7	16.4
	증감폭	+0.7	+0.9	+1.0	+0.5	-	+0.3	-0.7	

※ 증감폭은 변동률(%)이 아닌 '07년과 '06년의 임대료 차이임

※ 2007년은 2006년 4/4분기('06.10~'06.12) 기준이며, 2006년은 2006년 2/4분기('06.4~'06.6)기준

자료: 「2007상반기 오피스·매장용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조사 보고서」, 건설교통부

○ 서울지역 임대료 수준

- 서울 오피스빌딩의 경우 전통적인 중심지로서 지가가 가장 비싼 도심 지역의 임대료가 20.5천원/㎡으로 가장 높았음. 우량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본사가 집중된 도심지역은 전반기 대비 1.2천원/㎡상승하였으나, 여의도·마포지역과 강남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서울 매장용 빌딩의 경우 임대료수준이 가장 높은 도심 상권이 143.7천

원/㎡으로 나타나 신촌상권(54.9천원/㎡), 강남상권(47.8천원/㎡)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서울의 핵심 상권지역인 도심·강남·신촌 상권은 꾸준한 임차수요로 임대료가 전반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영등포 상권은 영등포 시장 재개발 지연의 여파로 전반기 대비 1.8천원/㎡ 하락

<서울지역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빌딩 임대료 수준>

(단위: 천원/㎡)

구분		오피스빌딩(3층이상)				매장용빌딩(1층기준)				
		도심	여의도/마포	강남	기타	도심	강남	신촌	영등포	기타
임대료 수준	2007	20.5	13.2	18.8	12.6	143.7	47.8	54.9	36.8	41.6
	2006	19.3	13.2	18.8	12.9	139.1	47.3	53.9	38.6	40.7
	증감폭	+1.2	-	-	-0.3	+4.6	+0.5	+1.0	-1.8	

※ 증감폭은 변동률(%)이 아닌 '07년과 '06년의 임대료 차이임

※ 2007년은 2006년 4/4분기('06.10~'06.12) 기준이며, 2006년은 2006년 2/4분기 ('06.4~'06.6) 기준
자료: 「2007상반기 오피스·매장용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조사 보고서」, 건설교통부

○ 공장부지 비용

현재 분양중인 주요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별 부지 분양가격을 보면, 산업단지 주위의 토지가나 정책적인 여건 등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당 최저 70,000원(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최고 204,000원(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대개 10만원 내외 수준임. 또한 산업시설구역이 지원시설구역보다 50~70%수준으로 분양가격이 낮으며, 광주 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전남 대불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충북 오창외국인단지, 경북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

(단위:천원/㎡)

지역별	단지명	분양/임대	분양가/임대료
광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122(산업시설구역)/204(지원시설구역)
	광주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	0.68/년
강원	북평국가산업단지	분양	82(토지대금10%를철거이행보증금납부)

충북	오창외국인단지	임대	1.344/년
전북	군장국가산업단지	분양	110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분양	70(산업시설구역)/127 (지원시설구역)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	0.36/년(임대보증금4.3)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분양	139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	1.1/년

(자료원 : 한국산업단지공단(2007년 9월 30일 기준))

□ 인프라 환경

○ 산업인프라

- 동북아의 허브 인천국제공항

2006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실적을 보면, 63개 항공사가 43개국 142개 도시로 2,820만 명을 수송. 인천공항은 국제화물 231만 톤을 처리하여 개항 6년 만에 국제 항공화물 물동량 세계 2위의 공항으로 올라섰으며, 현재 2단계 확장 건설공사가 진행 중. 최근에는 중국발 물류유치를 위한 해공복합운송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07년 3월에 1차 개통된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40km 거리를 연결하고 있으며, 2009년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고속철도와 연계로 국내 주요 도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임. 2006년에 개장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에는 DHL, FedEx, TNT 등 세계적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류 및 화물관련 기업이 화물터미널 지역과 공항물류단지 내에 입주 중

- 지정학적으로 최적인 해운항만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2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한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 유럽,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주간선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철도가 개통될 경우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을 항만 배후권화하는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음. 또한 부산 신항만과 광양만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신항만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있어 국제적인 물류단지로 자리잡게 될 것임

- 고속철도와 남북철도 운행

2004년에 서울-부산, 서울-광주간 고속철도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 2017년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동서축 이동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할 것임

2007년 5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 시험운행이 이루어졌고, 한반도종단철도가 구축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와 연결돼 총 8만 1천km의 아시아횡단철도망까지 연장 가능. 이 계획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해양 중심의 물류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아시아 및 유럽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물류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될 것임

- 세계최고수준의 IT 환경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DOI)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181개국 중 1위를 차지. 디지털 기회지수는 인터넷 보급률, 소득대비 통신요금 비율, 인터넷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임. 이처럼 세계적인 인터넷강국으로 자리잡은 한국은 현재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차원에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있음. 이 작업이 완료되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임

IT 기술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초고속 휴대인터넷 시스템, 지상파 DMB, 지능형 통합정보방송, 내장형 소프트웨어통합표준기술, 양방향 DMB 저전력 SoC, 텔레매틱스 무선통신통합기술 등과 같은 IT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신기술들은 56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CDMA기술에 이어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임

- 세계적인 R&D 센터

최첨단의 IT 인프라,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IT업체들, 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소비자층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м. Microsoft는 모바일 혁신 연구소를, IBM은 IBM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소를, Google은 엔지니어링 R&D 센터를 한국에 개설. Motorola, Microsoft, Intel 등은 국내 소비자에게 먼저 검증을 받기 위해 신제품을 한국에 선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음. Motorola와 eBay는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를 설립하여 중국,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관

리. Kimberly-Clark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아시아 혁신센터를 설립했고, Siemens는 의료 연구개발센터를, Dupont은 나노 연구개발센터를 운영 중. 또한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Pasteur)가 2004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음

○ 산업입지 지원

한국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국내 산업단지와는 별도의 입지를 확보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이 입지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나뉨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공간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지원 및 임대료 감면을 제공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정부는 산업단지내의 일정구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임대전용으로 운영.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1%범위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 자유무역지역

관세특례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제조, 물류, 유통, 무역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주로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 유통·화물터미널 지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며, 일단 지정되면 임대료와 조세감면, 관세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

- 경제자유구역

해당 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 활동 이외에 생활, 경영환경까지도 지원해주는 행정 구역.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곳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환경, 행정지원 등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가 허용되며, 차별화된 혜택이 주어짐

□ 기타

- 기타 각 지방 산업단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자료 : e-클러스터 산·학·연 통합정보망)

천안외국인투자지역

- 조성목적 및 특징: 임대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 사업시행자/관리기관: 천안시장 / 한국산업단지공단(중부지역본부)
- 위치: 천안 북서쪽 5km지점의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성성동, 차암동 일원
-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임대) : 171 (임대보증금 별도 : 총임대료 1년분 이내)(원/㎡)
- 산업용지 분양현황: 분양면적:510천㎡, 미분양면적:0천㎡
- 입주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기술업종 및 NT마크획득 신기술업종, 첨단기술
-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 또는 외투자분이 30%이상인 합작기업, 기존진출기업의 이전도 가능
- 입주제한: 고도기술업종 및 NT마크획득 신기술 수반사업을 제외한 업종
- 도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5km) 이용(서울 95km, 대전 93km)
(국 도) 1번(서울↔천안↔신의주)
(지 방 도) 628번(음봉↔온양), 693번(성거↔안성)
- 철도: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 천안역(5km), 천안아산(KTX역, 3km) 이용
- 항공: 청주공항(36km), 김포공항(112km)이용
- 항만: 아산항(40km) 이용 : 2~5만톤급 선박접안 가능, 화물하역능력 2,450만톤/년, 화물접안능력 21선좌
- 용수 : (취 수 원) 대청호에서 공급
(공업용수) 24,000톤/일, 생활용수 : 5,500톤/일
- 오 · 폐수: 단지내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
(처리능력) 47,000톤/일
- 전력: (인입경로) 아산전력소 → 서천안변전소 → 한샘변전소 → 입주업체
(공급능력) 전압 154KV, 용량 292,475KVA
- 통신: 천안전화국에서 2,200회선 공급
- 산업폐기물: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내 13천톤 처리규모
- 에너지 공급시설: 액화천연가스 공급
- 노동력: (배 후 도 시) 천안시 인구 519천명(남 263천명, 여 256천명)
- 세제: 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

세·부가가치세 감면

- 금융: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자금 [문의 : 산단공 산학협력담당 02) 6300-5621/3]
-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8.25%
- 산업기반기금: 지원한도 2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7.5%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문의 : 충청남도 중소기업과 041) 220-3222]
- 시설자금: 지원한도 7억원이내, 대출기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8.5%
- 운전자금: 지원한도 2억원이내, 대출기간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금리 연 8.5%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은 무상임대하며, 연구소 설치 운영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병역특례기업 우선 지원

광주평동외국인투자지역

- 조성목적 및 특징: 국내산업의 첨단과학기술 향상을 위해 첨단고도산업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도모
- 사업시행자/관리기관: 광주광역시/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 위치: 광주 서쪽 3km지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옥동, 월전동 일원
-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57(원/㎡)
- 산업용지 분양현황: 분양면적:863천㎡, 미분양면적:99천㎡
- 입주업종: 고도기술 수반업종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고도기술업종 일반제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29, 31, 32, 34, 및 광산업에 한함
- 입주자격: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체(임대용지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3년 이내 유치)
- 입주제한: 공해 과다유발업종
- 도로: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평동IC 이용(서울 290.8km, 부산 286.8km)
(국도) 1번(목포↔광주↔신의주), 22번(정주↔광주↔순천), 24번(광주↔울산)
(지방도) 60번(목포↔광주↔양산)
- 철도: 고속철도(송정역 3km) 서울 2시간 30분 (서울 355.6km, 목포 70.8km, 부산 362.8km)
- 항공: 광주공항(3km) 이용(상해 1회/일, 서울 10회/일, 제주 8회/일)
무안국제공항(50km) 건설중(2008년 완공예정)
- 항만: 광양컨테이너 부두(80km)·목포항(50km) 이용 : 목포항 화물하역능력 2,536천톤, 화물접안능력 9선좌
- 용수: (취수원) 주암댐을 수원으로 44만톤/일 용수공급시설 완비, 수원보존량 풍부

(공업용수) 39.2톤/일, 생활용수 : 5천톤/일

- 오·폐수: 광주 송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처리 처리능력 : 6만톤/일
- 전력: (인입경로) 영광원자력발전소 → 평동변전소 → 단지변전소 → 입주업체 광주 송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처리
(처리능력) 6만톤/일
- 통신: 광산전화국에서 5,200회선 공급
- 산업폐기물: (특정산업폐기물) 환경관리공단 위탁처리
(일반산업폐기물) 광주하남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 설치예정
- 에너지 공급시설: 해양도시가스에서 LNG공급
- 노동력: (배후도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구 310천명(남 156천명, 여 154천명)
- 세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15년간 전액면제
- 금융: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자금 [문의 : 산단공 산학협력담당 02) 6300-5621/3]
-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5.33%
- 산업기반자금: 지원한도 2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5.5%

(3) 노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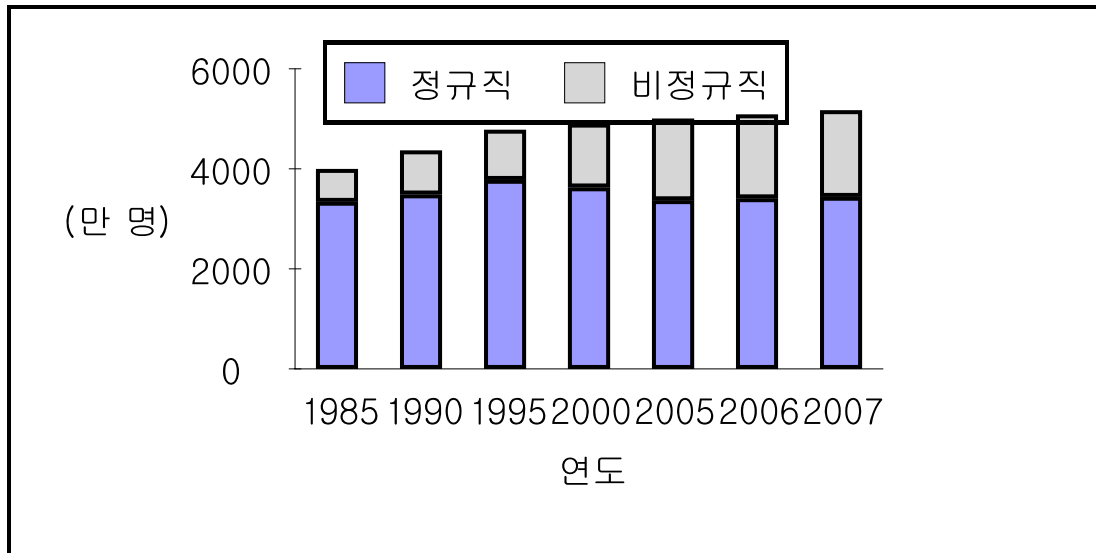
■ 일 본

□ 노동정책

- 일본에서는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발굴에 주력하고 있음.
- 이외에도, 현재 비정규직의 증가 및 모자가정의 취업문제, 인력부족, 고령자취업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음
- 특히 2007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임자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2004년 6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 혹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

- 취업형태가 다양해지면서 9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취업형태별 고용자수 추이>



(자료원 : 총무성통계국)

- 노동조건을 규정한 「노동기준법」, 노동자의 안전위생에 대해 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자 보호 법규는 사업주가 내·외국인 또는 내·외국법인을 불문하고 일본 국내에 있는 한, 모든 기업에 적용됨

□ 인건비

- 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양쪽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높은 쪽의 금액이 최저 임금으로 적용.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그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대표적인 도도부현의 최저임금 현황>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전국 평균액
최저 임금 시간액수(엔)	766	748	683	703

- 일반적인 일본기업에서는 매달 임금을 지불하며(월례임금)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함. 특징적인 것은 월례임금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임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여금의 비율이 비교적 크다는 점임¹²⁾. 임금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 비율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외 노동 등의 잔업수당 단가를 낮추게 됨

-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액이 증가하는 연공임금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직능급·직무급뿐만 아니라 목표달성도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그 결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함.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매년 일본의 임금실태에 관한 통계정보인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를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하고 있음
-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 법정휴일의 노동, 심야(밤 22시부터 새벽 5시)노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임금에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하게 할증된 임금을 지불해야 함

<임금할증율>

	임금 할증율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	25% 증가
법정휴일의 노동	35% 증가
심야(밤 22시부터 새벽 5시)노동	25% 증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심야노동	50% 증가
법정휴일의 심야노동	60% 증가

□ 노사분규

-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됨. 또한 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일본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7년 6월 기준 18.1%로 추정되며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임. 또한 그 조직률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조직률이 47.5%로 추정되는 데 반해,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14.3%, 1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1.1%임

12) 2004년도 민간기업의 상여지급은 평균적으로 소정내 월례임금(사무·기술직)의 4.41월 분이었음

<노동조합수/조합원수 및 추정조직율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노동조합수	29,745	29,320	28,279	27,507	27,226
노동조합원수 (천 명)	10,531	10,309	10,138	10,041	10,080
고용자수 (만 명)	5,373	5,371	5,416	5,517	5,565
추정조직율 (%)	19.6	19.2	18.7	18.2	18.1

(자료원 : 후생노동성)

- 일본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이며 큰 분류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노사교섭이나 노사협회가 형식적이며 노동조합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임

□ 인력확보

- 일본에서는 헬로워크(hello work : 공공직업안정소)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이 전국 각지에 있어, 모든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을 무료로 지원
- 각 지방공공단체,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무료로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민간 직업소개회사(통상적으로 성공보수제의 인재등록형, 이그제큐티브 서치형(Executive Search) 등)도 많음. 신문, 잡지(전직 정보지, 업계지 등), 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도 있음
- 인력 채용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어떠한 노동자를 몇 사람이나 채용할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으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인광고를 낼 경우에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 남녀를 특정하여 모집할 수 없음

□ 노동계약

- 인력 채용 시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자는 서면에 의해 아래의 노동조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 취업하는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 업무시작 및 근무시간, 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의 마감 및 지불 시기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를 포함)

- 노동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간을 규정할 경우에는 몇 가지 특례를 제외하고 3년이 상한선임. 단 노동계약기간 첫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노동자는 언제라도 사용자에게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음
- 노동자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노동자의 능력이나 업무 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인정함.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지만 그 기간 동안 또는 종료 후에 그 노동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함. 단, 정당한 채용 거부로 인정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해서 채용 시에 몰랐던 사실을 수습기간 동안에 알게 되어 그 사실에 의해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성한 경우에 한함
- 일본기업에서는 노동자의 배치전환이나 파견근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전근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근로시간

○ 노동시간·휴식·휴일

-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단, 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소매·이미용 등의 사업, 영화·연극 사업, 보건위생사업, 음식점·오락장 사업에서는 1주일에 44시간·1일 8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음
- 노동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45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 중간에 주어야 함

- 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또는 4주를 기준으로 4일 이상 주어야 함(법정휴일). 휴일이란 일요일이나 경축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

○ 시간외노동·휴일노동에 관한 협정(삼육협정¹³): 三六協定)

- 사업소는 법정노동시간을 넘은 노동이나 법정휴일에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노동·휴일노동에 관한 협정신고서」를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에 제출해야 함

○ 변형 노동시간제

- 업무는 종류에 따라 연·월·주 단위로 노동시간에 큰 편차가 있음. 그러한 경우, 일정 기간 내의 평균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내로 함으로써, 특정한 주·일에 대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임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아래와 같은 노동시간제도의 채용이 인정됨. 각각의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정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관련 사항을 정해두어야 함
- 연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 1개월 초과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을 시키는 제도. 이 제도를 채택했을 경우, 특례조치에 의해 1주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에서도 1주 40시간 이하로 하여야 함
- 월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노동시간이 40시간(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시킬 수 있음
- 플렉스타임제(flextime system: 근무시간 자유선택제) : 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에는 플렉스타임제도 있음. 이것은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청산(清算)기간: 노동계약상 노동자가 일해야 할 시간을 정한

13) 삼육협정이란 시간 외·휴일노동에 대한 협정서로, 이에 관한 사항이 일본 노동법 제 36에 규정되어 있는데서 유래

일정기간)의 총 노동시간을 정해 두고, 노동자가 그 범위에서 업무일의 업무시작 및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임

- 주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 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 범위 이내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할증임금 없이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 단, 상시 고용된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소매업, 여관, 요리점 및 음식점만이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 또한 이 제도를 채택했을 경우, 특례조치에 의해 1주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도 1주 40시간 이하로 하여야 함

□ 휴가

-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한 후 6개월간, 전 노동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노동자에게 합계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단 노동자의 유급휴가 신청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속연수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일수 관계는 아래와 같음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일수>

근속연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
부여일수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2년간을 기준으로 소멸됨. 즉, 그 해에 취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휴가를 쓰지 않은 일수는 그 다음 해에 한하여 이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이월분과 신규로 취득한 유급휴가일수를 합해서 연 최대 40일(근속연수가 7년 6개월 이상인 자)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노동자 개인의 부상, 병치료 등에 의한 휴업에 대해서는, 위의 유급휴가와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필요는 없음. 그러나 본인의 결혼, 근친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위의 경우와는 별도로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음
- 출산·육아·간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각 휴업 기간 중 무급도 가능함

· 산전·산후 휴업

출산예정인 여성노동자로부터 출산예정일 6주(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14주)전부터 휴업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를 인정해야함. 또한 출산 다음날부터 8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됨

· 육아 휴업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부터 휴업(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1.5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를 인정해야함. 노사협정으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고용된 지 1년 미만인 자, 배우자가 정상적인 상태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 등은 육아휴업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 간병 휴업

일정한 간병이 요구되는 상태의 가족이 있는 노동자로부터 그 간병을 위한 휴업(해당 가족 1인에 대해 통상적으로 계산하여 93일간을 한도로 함)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에 대해 해당 가족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정해야함. 노사협정으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고용된 지 1년 미만인 자, 3개월 이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아이의 간호 휴업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는 아이가 병이 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간호를 위해 1년에 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노동자가 직무수행 시에 지켜야 할 규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직장의 규칙임.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해야 함. 이와 같은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소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의 작성을 장려하며 취업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한 노동계약에 준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님. 취업규칙 작성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근무 시작·종료 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육아·간병 휴업을 포함) 및 노동자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시킬 경우의 취업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임시임금 등은 제외)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마감 및 지불 시기,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를 포함), 퇴직수당, 상여, 안전위생 등 그 밖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 외에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노사협정 등을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나지 않도록 사업상의 안전위생면에서 배려할 의무가 있음
- 상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전에 소정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상근노동자에 대해서 1년에 1회(심야업, X레이 업무 등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기간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기퇴직(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의 경우에는, 퇴직 2주전의 사전 통고로 그 효력이 발생함.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예정일 2주보다 훨씬 이전에 사전 통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확정된 판례는 없으나 1개월 전 이상의 사전통고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 한편 해고(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노동계약이 종료하는 것)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가 됨.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고 유효성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노동법 전문가(변호사, 사회보험노동사 등)에게 사전에 상담할 필요가 있음
- 정리해고(기업경영 악화에 따라 인원 정리를 위해 행하는 해고)의 경우, 그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판결례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해고의 필요성

기업이 경영상 인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배치전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경영 노력이 이루어져 있을 것

· 인선의 타당성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그 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을 것

· 해고 수속의 타당성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을 것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됨

·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휴업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 여성노동자가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인 경우에는 14주간), 산후 8주간 휴업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 아래와 같은 해고는 무효가 됨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일 년 이내의 여성노동자의 해고

·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한 것에 의한 해고

-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함.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임금(예고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단 아래와 같은 경우로, 관할 노동기준감독소장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해고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노동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 내에서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현저하게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다른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경우
- 고용시 채용조건이 되는 경력 같은 것을 사칭했을 경우
- 원칙적으로 2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고, 출근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고, 수차례의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법적으로 해고 수속을 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 실무적으로는 경영상황이나 직무상황에 대해 해당 노동자에게 잘 설명하고 퇴직하도록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설득에 응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노동자가 퇴직에 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퇴직금의 추가 등)을 협상하는 경우도 흔함

□ 사회보장제도

- 일본에서는 전국민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일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대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제도로 아래의 4종류가 있음

보험제도	보험성격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통근중의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고용보험	노동자의 실업급부(給付)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조성금·장려금 등) 위한 보험
건강보험·간호보험	의료·간호 지출에 대한 보험
후생연금보험	노후, 사망, 장애 급부를 위한 보험

- 통상적으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쳐서 「노동보험」, 건강보험·간호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합쳐서 「사회보험」이라 함. 처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측이 감독관청에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하게 됨¹⁴⁾. 보험

14) 2005년 8월부터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의 설립이 가능해짐. 그 조합원을 개인사업주, 조합원으로 고용된 자를 노동자 또는 종업원으로 해서 보험이 적용됨

료는 기업측이 종업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그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서 감독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노동·사회보험제도 정리>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연간 임금총액의 %)		비고
			사업주부담	노동자부담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업무상, 통근중 재해로 인한 부 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의 요양비, 휴업 · 장 해 · 사 망 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노 동 자 를 고 용 하 는 모 든 사 업 소 에 적 용	0.45% (주로 사무를 보는 업종)	-	· 사 업 주 에 대 한 특 별 가 입 제 도 있 음 · 보 험 료 율 은 업 종 에 따 라 다 른
고용 보험	실업자에게 급 부, 육아휴업 중 인 자·고령자에 게 급부 등		0.9%	0.6%	해외본사로 부터의 부 임자는 가 입 면제
건강· 간호 보험	업무상, 통근중 이외의 부상, 질 병, 출산 등에 대해 급부		4.1% (40세 이상인 자는 4.715%)	4.1% (40세 이상인 자는 4.715%)	보험료율은 정 부 관 장 건강보험의 경우
후생 연금 보험	노령, 장애, 사 망에 대한 급부		7.498%	7.498%	외 국 인 에 대 한 탈 퇴 일 시 금 제 도 있 음
아동 수당 거출금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에 대 한 거출금이며, 노동자에 대 한 복리후생과는 취지가 다름		0.13%	-	
합계			13.078% (40세 이상인 자는13.693%)	12.198% (40세 이상인 자는 12.813%)	

* 당분간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료율에 석면재해거출금으로 0.005%가 추가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용은, 노동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법률상 필요한 법정복리비용과, 법정복리비용 이외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용으로 구분됨. 최근 몇 년 사이 법정복리비용은 증가경향에 있는 반면, 법정외복리비용은 감소경향에 있음. 법정 외 복리에는 사택 제공 등의 주택 관련, 건강진단 등의 의료보험 관련, 급식 등의 생활원조 관련, 체육관 제공 등의 레크리에이션 관련 등이 있으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관련 지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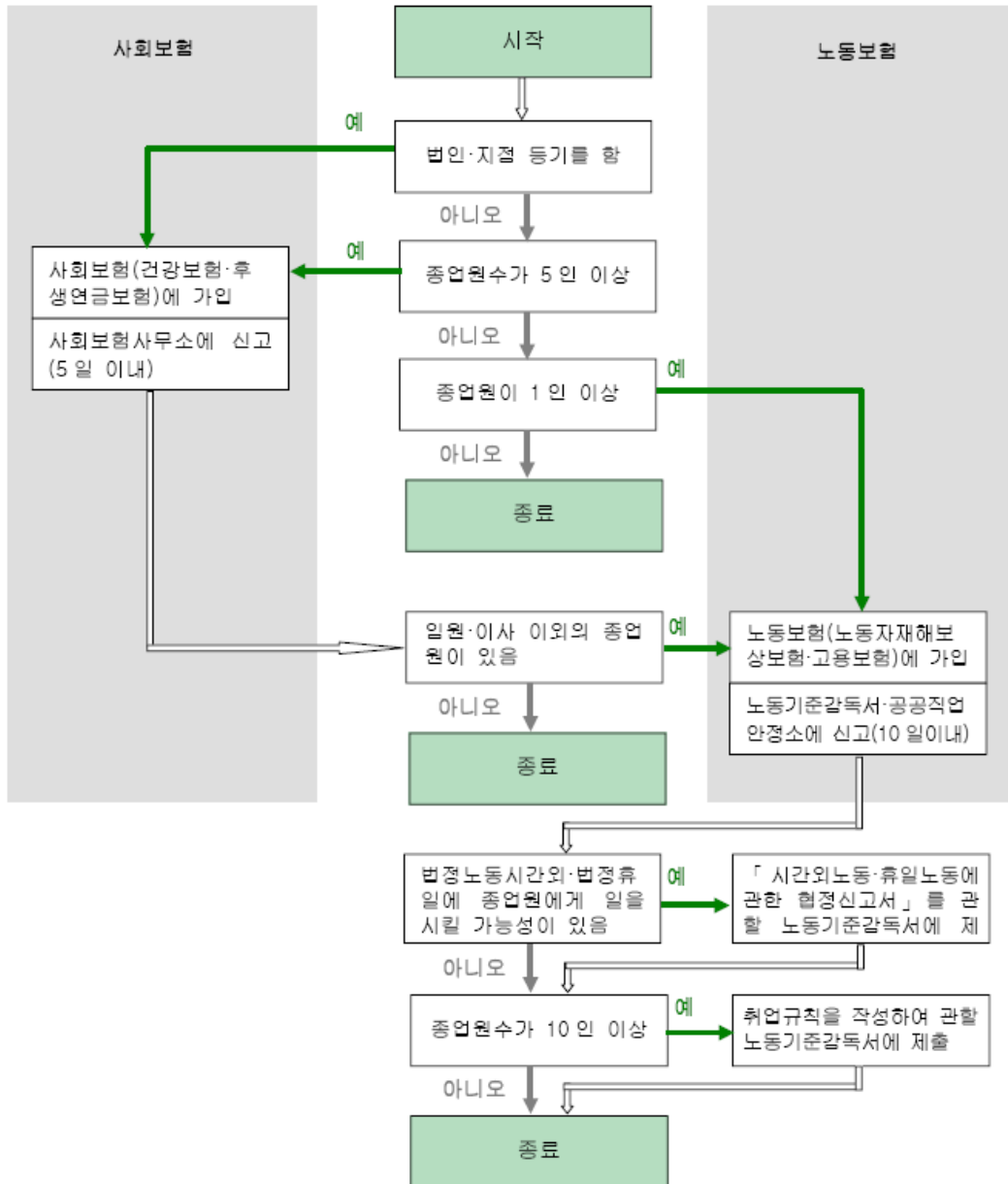
- 국가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예로써 아래와 같은 조성금이 있음

중기업기반 인재확보 조성금	창업(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일본법인 설립)에 따라 경영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고용했을 경우, 인재 1인당 140만엔(최대 5인)의 조성금을 지급함
직업경력 형성 촉진 조성금	노동자에게 목표가 명확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을 경우, 훈련기간 동안의 해당 노동자 임금의 1/3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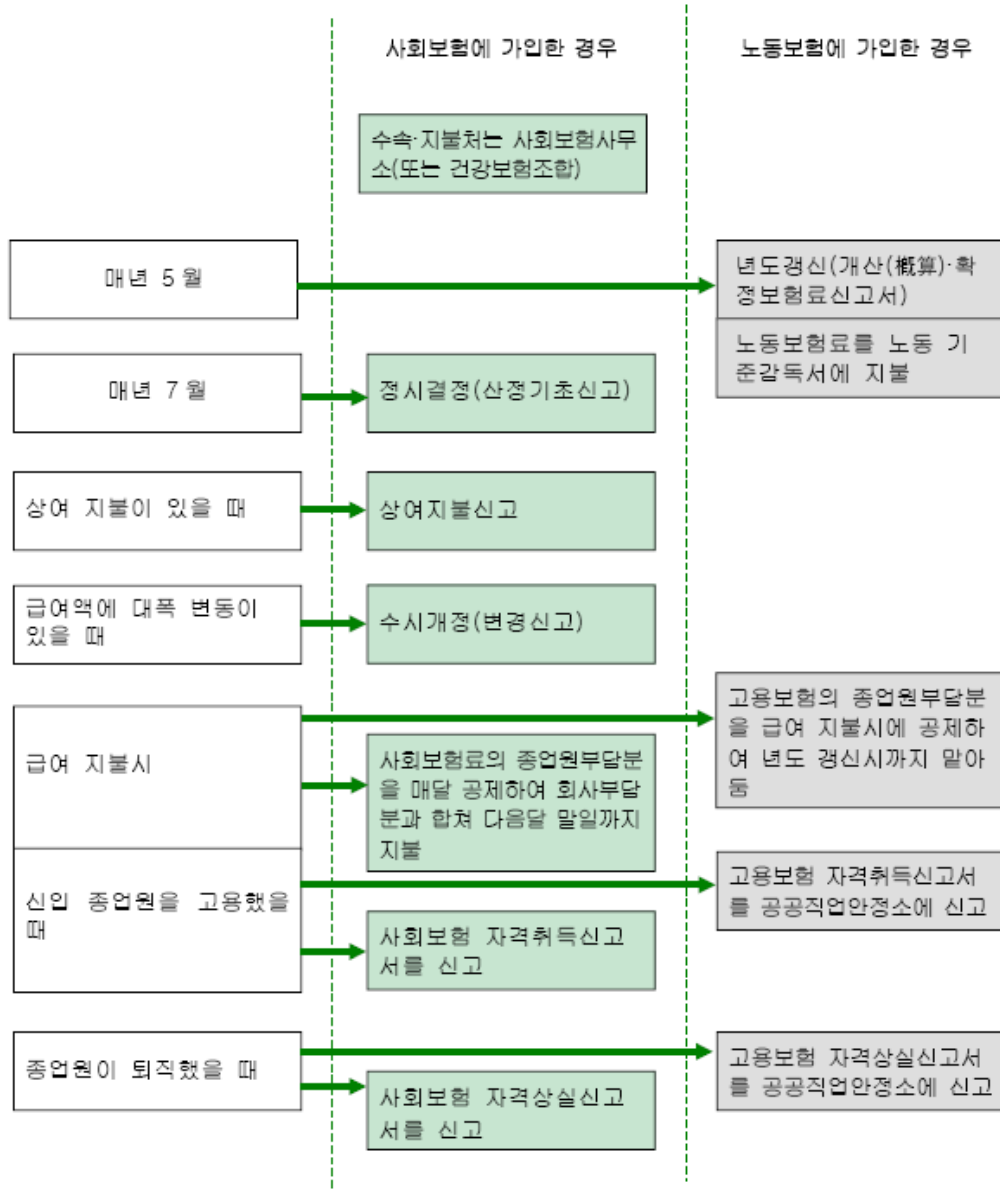
- 사회보험노무사란 인사·노무 전문가로서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인데, 기업의 의뢰에 따라, 급여계산 업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사무대리와 알선대리 업무는 (개업)사회보험노무사 및 변호사가 아닌 자가 직업으로 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

· 노동·사회보험관계 등 고용과 관련된 사무대리 · 노무관리(취업규칙의 작성, 임금제도의 설계·변경, 고용문제의 개선 등) 및 안전위생관계 등의 컨설팅 · 개별노사분쟁의 알선 대리 · 연금의 상담·청구 · 기타 고용과 관련된 업무
--

- 회사설립 및 종업원 채용시의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음



<매년 발생하는 수속>



■ 한 국

□ 노동정책

-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임금, 해고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됨

<노동법의 구분 및 적용대상>

구분	법		근로자수	비 고
개별적 근로관 계법	근로기준법		5인 이상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조항 적용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
	최저임금법		전사 업장	· '08년 시간당 최저임금: 3,770원
	산업안전 보건법	일 반	전사 업장	· 일부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만 적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100인 이상	· 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50인 이상	· 일부업종은 제외
		안전보건위원회	100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사 업장	· 5인 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전사 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조항 적용제외
집단적 노사관 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전사 업장	
협력적 노사관 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 정권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 사협의회 설치 ·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둠
고용관 련법	고용보험법		전사 업장	· 5인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50인	·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

	활법	이상	용해야함 · 미 이행시 부담금 납부, 초과고용시 장려금 지급
	고령자고용촉진법	300인 이상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제조업의 경우2%) · 고용보험에서는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임금

-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이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일급 30,160원(8시간 근로기준)을 기준으로 함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 평균임금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등에 적용됨.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연장·휴일·야간·연차휴가·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됨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작업완료 후 정리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됨
- 만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됨
- 다만, 취업규칙(2주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단위)에 의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2주 또는 1개월)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음. 그러나 이때에도 임신 중인 여성과 연소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구분	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 3년간 16시간)	-	-
여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 3년간 16시간)	본인 동의	본인 동의
산후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임신중 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불 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18세미만 근로자	7시간	40(42)시간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1주 6시간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유해위험 작업(고기압) 근로자	6시간	34시간	불 가	-	-

□ 휴일과 휴가

휴일과 휴가는 크게 그 내용과 조건, 효과를 법으로 정하는 ‘법정’휴일·휴가와 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약정’휴일·휴가, 2가지로 나눔. 법정 휴일·휴가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으며, 약정 휴일·휴가로는 공휴일, 회사창립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을 정할 수 있음

○ 유급주휴일(週休日)

-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주휴

일에 근로를 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총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산전후 유급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급함

□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통상 해고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 두며, 징계 시 해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함.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음(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부함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협의회에서 취급되는 사항으로는 의결과 이행 의무에 따라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음

□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7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제외사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 단,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됨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7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됨

·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제외사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 단,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가입 가능

<4대 사회보험제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
시행		1995.7	1964.7	1988.1	1977.7
적용사업 장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가입대상		65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입제외		사업주	사업주 (예외적 가입가능)	1월 미만 근무자	1월 미만 근무자
외국인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가입 가능	가입대상	원칙적 가입대상 (국가별 차등 적용)	가입대상
자격취득		입사일	-	입사일	입사일
자격상실		퇴직일의 다음날	-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보 험 료	근 로 자	임금총액 0.45% (실업급여)	없음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2.385%
	사 용 자	실업급여: 0.45% 고용안정사업+직업 능력개발: 0.25-0.85% (기업규모별 차이)	임금총액 7/1000 - 533/1000(업종별 차이)	표준보수월액 4.5%	표준보수월액 2.54%
보장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 등
주관		노동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수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4) 기술 및 R&D 환경

■ 일 본

□ R&D 정책

-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액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높여왔음. 제 1기 (1996년-2000년) 17조 엔, 제 2기(2001년-2005년) 24조 엔, 그리고 제 3기(2006년-2010년) 25조 엔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제 3기(2006년-2010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본이념	• 기본자세 - 사회, 국민에 지지받고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 - 인재양성과 경쟁적 환경의 중시
	• 정책목표 - 비약지 발견/발명 - 과학기술의 한계돌파 - 환경과 경제 양립 - 이노베이터 일본 - 평생 발랄생활 - 안전이 자람이 되는 나라
과학기술의 전략적중점화	• 기초연구추진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 •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의 중점화 중점추진4분야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러지, 재료), 추진4분야 (에너지, 만들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
과학기술 시스템개혁	• 인재육성, 확보, 활약 촉진 • 과학 발전과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창출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강화 • 국제활동의 전략적추진
정부연구개발 투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액규모는 약 25조엔 (개발기간 중 GDP대비 비율은 1%, GDP성장률 평균 3.1%을 전제로 함)

(자료원 : 문부과학성 2008년 과학기술백서)

□ GDP대비 R&D 투자금액

- 정부 연구개발투자액의 GDP대비 비율은 구미선진국과 같은 수준 (GDP

대비 1%)을 확보하고자 함. 단, 동기간중의 GDP성장률은 평균 3.1%를 전제로 함

- 실제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중에도 GDP대비 1%를 확보하고자 도모하였으나 실적집계에 따르면 0.86% 수준이었음
- 정부투자액 뿐 아니라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등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GDP대비 비율은 약 3.61%로 나타남 (2006년 기준)

□ 연도별 R&D 경비 지출액

-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990년부터 크게 성장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및 급성장중인 중국, 한국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구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우주개발예산은 물론,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나노테크놀러지, 재료 분야에서도 추격당하고 있는 실정임

<조직별 R&D경비 추이>

연도		산업		정부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민영연구기관		합계액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구성 비%	
전 체	2004	118,673	70.1	14,976	8.8	32,740	19.3	2,988	1.8	169,376
	2005	127,458	71.4	13,822	7.7	34,074	19.1	3,098	1.7	178,452
	2006	133,274	72.2	14,304	7.7	33,824	18.3	3,229	1.7	184,631
자 연 과 학	2004	118,415	75.9	14,553	9.3	20,276	13.0	2,755	1.8	155,999
	2005	127,277	77.3	13,386	9.9	21,197	12.9	2,861	1.7	164,721
	2006	133,026	77.8	13,831	8.1	21,038	12.3	3,032	1.8	170,927

(자료원 : 총무성통계국 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

□ 기술 및 과학 인프라 현황

- 일본의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은 매우 높으나 매니지먼트분야, 예를 들어 기업가정신의 보급도, 사업화보급도의 수준은 낮음

-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투자 뿐 아니라 기술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 전환 인재가 절실함
- 사단법인 경제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대졸자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며 창조성과 문제설정능력, 적극성,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문부과학성의 연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젊은 연구자의 전문분야의 지식은 높으나 과제설정능력, 사회상식, 창조성은 낮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내용에 충실이 기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여성연구자의 경우 출산, 육아, 개호 등 가정일로 인해 연구자수가 적으며 처우문제, 근무시간 등 특수성에 맞춘 탄력적인 환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글로벌 R&D 센터 유치 현황 및 특징

- 일본 JETRO의 투자 입지상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제조거점, 지역총괄거점, 물류거점으로서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열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일하게 강점을 지닌 분야가 R&D (연구개발) 분야였음
- 단, 글로벌 R&D센터의 유치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술자의 고령화와 젊은 기술인재의 이직, 그리고 경영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능력(기술자)의 부재임
- 최근에는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이 동분야 투자촉진에 주력하고 있는데, 낮은 법인세, 다양한 우대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일본의 입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R&D 투자유치 사례

· 네슬레사 연구개발거점 마련

- 세계 최대 식품메이커인 스위스의 네슬레가 일본에 연구개발거점을 마련함. 2009년부터 영양연구, 음료개발, 포장기술의 세 분야 거점을 순차로 개설할 예정임
- 투자배경은 일본의 제품개발, 품질관리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출생률저하 등으로 일본의 식품시장 자체의 큰 성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생산, 포장기술을 개발, 일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투자액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영양연구 거점은 “네슬레 일본 리서치센터”(가칭) 로 도쿄대학에 네슬레의 연구인이 상주. 음료개발은 네스카페 커피를 제조하고 있는 시즈오카현 시마다공장에 거점을 두고 포장기술은 고베시의 네슬레 일본본사내에 거점 개설예정

· 로레알사 연구개발 강화

- 로레알사는 1983년에 처음으로 헤어케어개발연구소를 설치, 올해로 25주년을 맞게 되는데, 기초부터 응용,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연구개발거점이 있는 곳은 프랑스외에는 일본 뿐 임
- 일본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출원수는 누계 약 8백건에 달하며, 연구자수는 200명 임

· 독일 머크사 의약부문 연구개발 확충

- 올해 5월 카나가와현의 아즈기사업소 이노베이션&QC센터 내에 새로 연구개발시설을 마련, 발암제를 비롯한 신약/신제품의 투입을 강화할 방침임
- 제조설비와 연구개발거점의 확충으로 일본내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미국 듀폰사 태양전지용 부재의 연구개발거점 설치

- 올해 9월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카나가와 사이언스파크(KSP)에 태양전지용 전극페이스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거점인 “PV라보”를 개설함

- 이는 우츠노미야에 소재한 태양전지용 개발거점을 KSP로 이전한 것이며, 올해 4월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정식으로 가동중임
- 상하이, 대만, 인도, 홍콩에도 연구개발거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일본 거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아시아 연구개발 중심지를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결정한 이유는, ①태양전지시장을 일본이 이끌고 있으며 ②재료 분야 메이커가 많고 ③기타 아시아제국에 비해 지적재산권의 의식이 높다는 점임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 큰 변화가 없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80년대에 연 10% 전후의 높은 성장을 나타낸 후 90년-2000년대 초까지는 평균 연 1-2%로 감소,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다시 견조히 성장세로 돌아옴
- 소재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연구소 설립 등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설비투자의 증가 및 기초연구의 비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의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기업의 글로벌한 활동이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제품, 기술의 사이클이 단기화되며, 수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이 장기적 시야에서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임

■ 한 국

□ R&D 정책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 국가 R&D투자를 GDP대비 3.23%('06)에서 5%('12)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12년까지 현재의 1.5배로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잠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10.8조원	11.9조원	13.3조원	14.7조원	16.2조원

○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계획 수립('08.8, 국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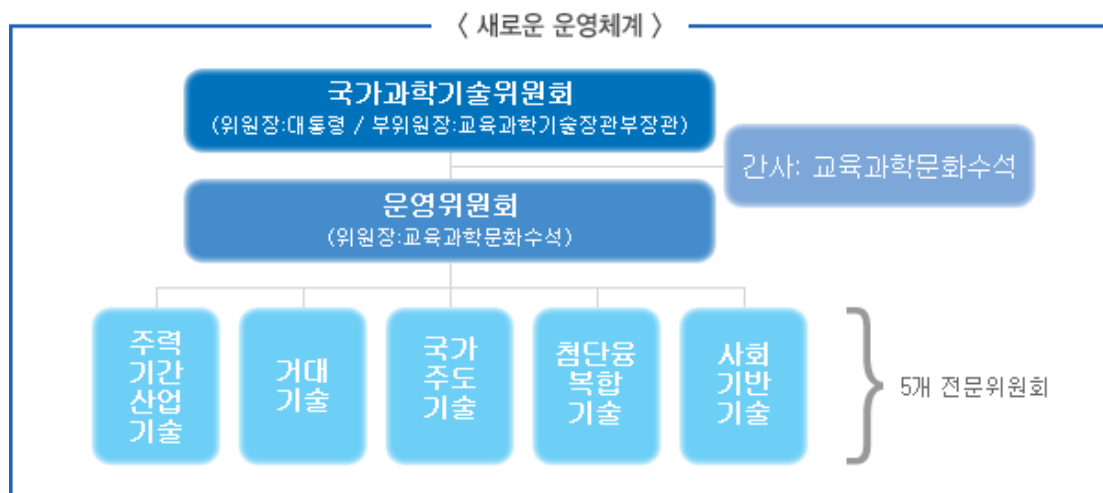
- 범부처 미래 융합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 기술융합 촉진형(기초원천분야), 신산업 창출형(u-헬스, 로봇), 산업 고도화형(미래형 자동차, u-시티) 등 추진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경제 만들기 기반 조성 ('08.12)

○ 국가 R&D투자 효율화

- 국가 R&D사업의 기획-재원배분-사업관리-평가-성과활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비효율 요인을 발굴 개선
- '08년 중 '공동관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형식적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상이한 사업관리방식을 통합·단순화

○ 민간주도의 전략적 R&D 재원 배분

- 국과위를 R&D재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컨트롤 타워로 운영
- 국과위가 국가 R&D 투자전략에 따라 예산배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R&D예산을 편성
- 국과위 체계를 운영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로 단순화



(자료원 :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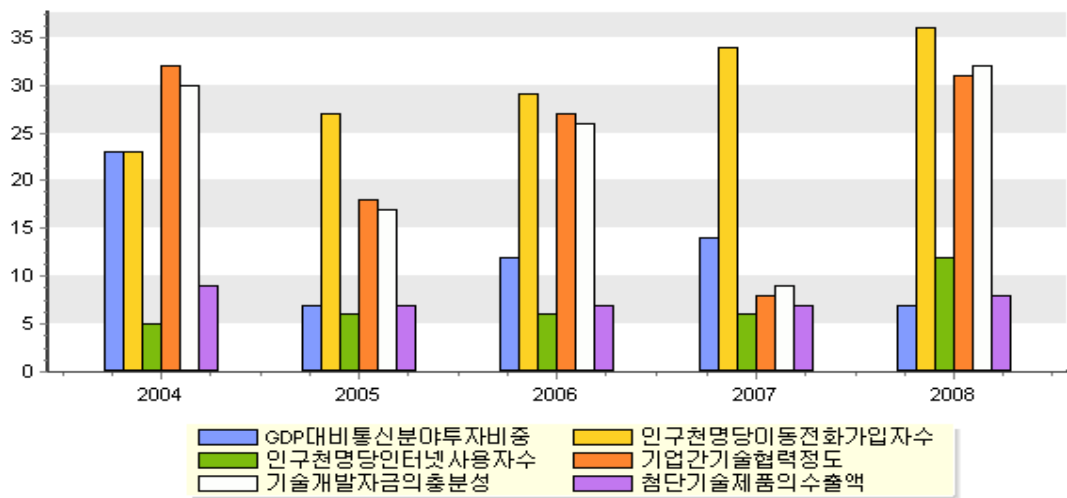
- R&D 재원 배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 국과위 전문위원회(5개)를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수요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 기획·조정기능 강화

<연구개발 투자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 신성장동력 창출>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각종 주요 중장기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의 연계를 강화

□ 기술 및 과학 경쟁력

<세부지표별 기술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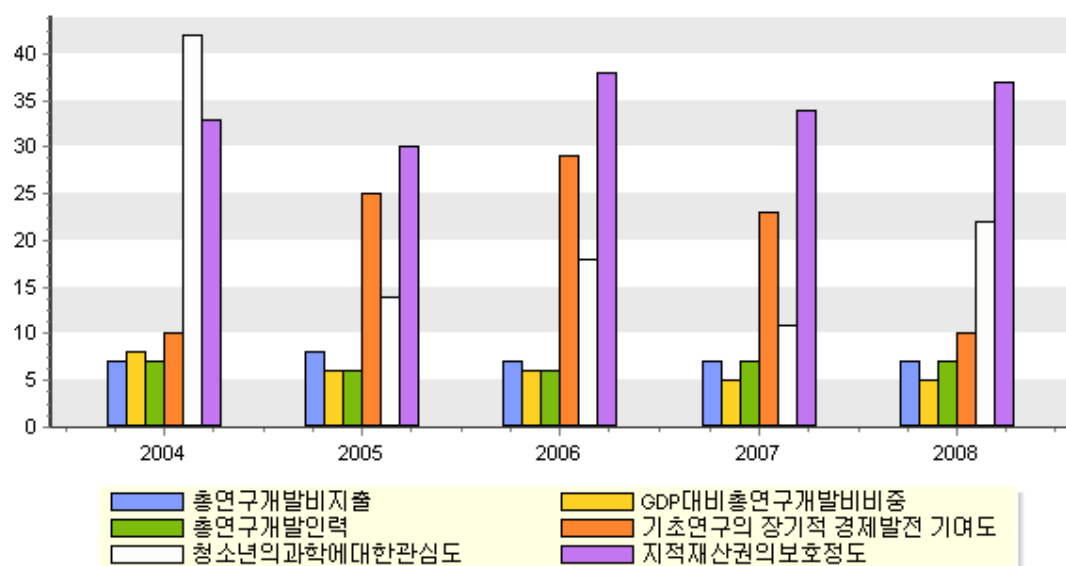
[단위 :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GDP대비통신분야투자비중	23	7	12	14	7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23	27	29	34	36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5	6	6	6	12
기업간기술협력정도	32	18	27	8	31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30	17	26	9	32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9	7	7	7	8

<세부지표별 과학경쟁력>

[단위 :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연구개발비지출	7	8	7	7	7
GDP대비총연구개발비비중	8	6	6	5	5
총연구개발인력	7	6	6	7	7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10	25	29	23	10
청소년의과학에대한관심도	42	14	18	11	22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3	30	38	34	37

□ R&D 투자금액

<GDP대비 연구개발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연구개발비	190,687	221,853	241,554	273,457	313,014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63	2.85	2.98	3.23	3.47

<주체별 연구개발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9,068,682	22,185,343	24,155,414	27,345,704	31,301,377
연구기관	2,626,355	2,964,646	3,192,887	3,497,050	4,102,366
대학	1,932,663	2,200,886	2,398,284	2,721,874	3,334,119
기업체	14,509,663	17,019,811	18,564,243	21,126,780	23,864,893
기업:공공:대학	76:14:10	77:13:10	77:13:10	77:13:10	76:13:11

(자료원 :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R&D 경쟁력 수준

○ 과학경쟁력

-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 정량적인 지표에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나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는 다른 지표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총 연구개발비 지출	7	6	2	30
GDP 대비 연구개발비	5	23	4	12
기업 연구 개발비	7	5	2	24
총 연구개발 인력	7	1	3	28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비율	8	5	3	4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	34	9	28	1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

○ 기술경쟁력

- 한국은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인구 천명당 광대역 통신가입자수의 순위에서 일본보다 높은 순위로 앞서 있으나, 통신기술의 충족도,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7	10	36	45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20	47	17	1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12	52	7	13
인구 천명당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	3	41	14	21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

○ R&D 효율성

-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는 한국, 일본이 각각 10,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 했으며, 기업의 기술흡수 항목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됨. 특히 FDI와 기술이전 경쟁력은 2년전 순위 95, 76위에 비교하여 28, 36위로 크게 상승하며 관련된 체계를 갖춰 나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음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총 연구개발비 지출	7	6	2	30
GDP 대비 연구개발비	5	23	4	12
기업 연구 개발비	7	5	2	24
총 연구개발 인력	7	1	3	28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비율	8	5	3	4
교과과정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	34	9	28	1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10	20	12	2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31	34	12	2
기업의 기술흡수	15	46	2	13
FDI와 기술이전	28	79	36	1
산학 연구협력	12	23	21	5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

○ R&D 혁신

- 한국과 일본은 모든 항목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R&D 혁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 기업의 R&D투자 적극성과 혁신역량은 세계 최상위권임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연구기관의 질적수준	14	37	15	13
기업의 R&D투자 적극성	7	24	2	10
기업의 혁신역량	9	25	2	19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

○ R&D 법, 제도적 환경

- 한국의 R&D 법적, 제도적 환경은 모든 항목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됨. 일본도 한국보다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세계의 경쟁국들에 비교하여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단위:순위)

항 목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37	35	16	2
법적 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	36	42	24	1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36	23	17	1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 지원정도	55	33	24	1
사이버 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45	37	22	1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8)

□ 주요 R&D 투자유치 사례

· 인피니언 R&D 센터 유치

2006년 말 기준, 전 세계 전력용 반도체 모듈 시장은 약 2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시장은 약 1.3% 점유. 2007년 4월 23일 부로 Infineon Technologies Asia Pacific Pte., Ltd.는 자본금 25억원을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에 추가 투자. 자동차 반도체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팔목할 만한 질적 양적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

- 현대기아 자동차와 인피니언은 국내 최초로 현대자동차 연구소 내에 현대기아-인피니언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현대자동차 시스템 사양에 맞춘 자체 반도체 개발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년 내 양산되어 적용될 예정에 있음

- 또한 인피니언코리아 자체적으로 오토모티브랩을 설립 투자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장화 제품들에 대한 개발 시험을 국내 유수의 전장업체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있고 현대기아-인피니언 혁신센터에서 개발된 최신 자동차 반도체를 완벽한 품질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한국 IBM

- 한국IBM UCL(Ubiquitous Computing Laboratory)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와 IBM 각각 15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400평 규모의 연구소 시설 및 50여 명의 기술 인력으로 출범

2006년까지 2개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007년 연구소 규모를 20% 이상 확장함. IBM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인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 한국IBM KSSL(Korea Software Solutions Lab)

IT업계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기 투자 시스템으로부터의 가치창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 2007년 4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연구소(20여 명 규모)가 설립됨

3. 생활환경

☐ 생활환경 개괄

- 일본의 생활환경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교통면에서는 대중교통이 완비되어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이동수단이 다양하고 편리함
- 의료면에서도 질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의료시설/기술수준이 높으며 의사부족, 진료과목의 편중 등의 문제는 있으나 외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은 없음
- 교육환경면에서도 대도시의 경우 외국인학교수가 많은 편이며 입학이 그리 까다롭지 않음
- 단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차에 장애가 많으며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함.
- 특히 한국인의 경우 한류붐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제고되었으나 북한 및 한일관계에 따른 영향도 다소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지진이 많다는 점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1) 주거환경

☒ 일 본

☐ 정부정책

- 주거관련 정책으로는 2006년 주생활기본법이 성립되었으며 2007년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발족함. 또한 주생활기본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에 국민의 주생활 안정의 확보 및 향상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이 각료회의에서 정해짐
- 국토계획/도시계획/건축규제 등의 면에서는 2007년 『도시재생특별조치

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의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됨

○ 2008년도는 주택정책 부문의 세제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음

- 주택에 관계된 에너지절약개수축진세제의 창설 : 지구온난화 방지를 향한 가정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개수를 행한 경우 소득세, 고정자산세에서 특례조치를 창설함
- 주택에 관계되는 내진개수축진세제의 확충 : 내진진단에서 설계, 개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제도를 가진 시군을 적용대상지역으로 하도록 운용을 개선함
- 토지 매매 등에 관계된 등록면허세의 특례조치의 연장
- 신축주택에 관계된 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의 연장
- 주택취득자금에 관계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특례조치의 연장

○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주택건축은 매우 엄격하며 2006년 내진강도를 위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건축기준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신규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여 건축/부동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음

□ 주택임차비용 (외국인 주거용)

○ 주택임차시에는 아래와 같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시키킨(敷金), 사례금에 해당하는 레이킨(礼金), 중개회사 수수료 및 첫 달 분의 월세가 필요하므로 통상 월세금의 5-6개월분을 선납해야 함. 즉 주택입주를 위해서는 초기경비가 과다함. 유동인구가 많은 학기초, 연초 등 수요가 많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약전에 임대료나 레이킨, 시키킨을 교섭가능한 경우도 있음

<주택 임차시 지불 내용>

	지불내용	지불처
계약시	시키킨 (통상 집세 2개월분)	집주인 (중개회사 경유)
	레이킨 (통상 집세 2개월분)	집주인 (중개회사 경유)
	수수료 (통상 집세 1개월분)	중개회사
	첫달 월세	집주인 (중개회사 경유)
매 월	다음달 월세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 레이킨은 주로 칸토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관습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혹은 없는 경우도 있음.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도 반환받지 못함. 시키킨은 퇴거시에 현상복구비로 얼마정도 공제하고 반환받는 경우가 많음
- 일본에서 주거용 맨션을 임차하는 비용면에서는 위와 같이 외국인/내국인의 차이가 따로 없으며 단지 물건선택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도쿄주변의 경우 임차료는 매우 비싼데 중심부인 야마노테선 안쪽은 아주 비쌌. 특히 외국대사관이 밀집된 미나토구는 고급물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월임차료가 100만엔 이상인 경우도 많음. 야마노테선 바깥쪽도 역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의 물건은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신주쿠구, 토시마구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음
- 도쿄 중심부에서 1시간 이내의 일반맨션의 월임차료는 방 1개인 경우 평균 5만엔 - 10만엔 임. 도쿄주변에서 남서방향인 추오센, 게이오센, 오다큐센, 이노카시라센, 토요코센 등의 역을 이용하는 지역이 임차료가 비싼 편이고, 북동방면인 사이쿄센, 게이힌토호쿠센, 케이세이센, 소부센 등이 비교적 싼 편임. 지역으로는 도쿄, 카나가와 지역이 비싸고 사이타마, 치바 쪽이 싸다고 할 수 있음

□ 주택임차 형태 (전-월세)

- 일본에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를 의존하여 찾는 것 보다 부동산 중개회사에 의뢰하는 편이 보편적임. 주택의 경우 소유주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100만 엔 이상의 고액 물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동산회사나 금융기관이 소유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 직접 접촉이 가능함
- 한국과 같은 전세는 없으며 따라서 주택임차의 경우는 월세만이 가능함. 임대차계약시에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은 반드시 일본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없는 경우 보증회사도 가능함.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인 경우는 법인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국민에 비해 임차물건이 한정됨

-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이며,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약 희망시에는 통상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함. 또한 계약 갱신시에는 1개월분의 갱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임차물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상이하므로 해약통보시기 및 갱신료 등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주택정보 제공

- 일본의 임차물건 정보지의 경우 일본어로만 쓰여있기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으며, 실제 정보지에 게재된 물건의 경우 외국인이 입주가능한 곳을 찾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영어로 검색가능한 사이트가 늘어났으며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부동산회사도 있음
- 최근에는 일반 맨션외에 게스트하우스, 외국인하우스라 불리는 외국인 전용 임대물건이 늘어나고 있음. 침대 등 가구가 갖춰져 있으며 보증금을 따로 지불해야 하며 임대료는 비싼 편이나 시키킨, 레이킨, 보증인이 필요없고 입주절차가 간편하여 인기가 높음
- 외국인의 주택임차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단체/지역	지원내용 / 문의처
사이타마현	· 외국인주거어드바이저 제도 부동산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주거 어드바이저가 주거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음. 사이타마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정보, 일본 부동산의 상관습, 임대부동산계약 관련 계약조건 등을 제공함. 일본어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이타마국제교류협회에서 통역봉사인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음. 사이타마국제교류협회자체에서 외국인 생활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도 대응가능함
	사이타마현 종합정책부 국제과 Tel. 048-830-2717 재단법인 사이타마국제교류협회 Tel.048-833-2992
치바현	· 외국인학생 주거어드바이저 사업 치바현 거주를 희망하는 유학생과 취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어드바이저가 상담을 받음. 임대부동산 공실정보, 상관습, 입주시의 일반적인 생활습관 등에 관해 상담가능.
	치바현 종합기획부 기획조정과 국제정책실 Tel.043-223-2254

	치바현 국제교류센터 Tel. 043-297-0245
카와사키시	· 카와사키시 거주지원제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인을 대신하는 보증회사의 보증과 입주후 트러블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주자가 월세 및 관리비의 35%정도의 보증료를 지불함으로써, 월세체납 등에 대비해 집주인에게 카와사키시가 월세 및 관리비 약 7개월분과 원상회복비용을 보증함 카와사키시 주택공급공사 사업부업무과 거주지원담당 Tel. 044-244-7623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거주 외국인을 위해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한국어도 있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생활가이드 주택편에서 주택, 이사, 계약서 등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음 http://clair.or.jp/tagengo/index.html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조사부 연락조정과 Tel. 03-3591-5485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 지정숙사사업 외국인유학생의 숙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적절한 민간숙사를 개척하여 외국인유학생 전용 지정숙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고마바사무소 유학생사업부 Tel. 03-6407-7456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유학생주택종합보상제도 외국인유학생이 민간숙사에 입주하는 데 있어 유학생주택종합보상에 가입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 제도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공제과 Tel. 03-5454-5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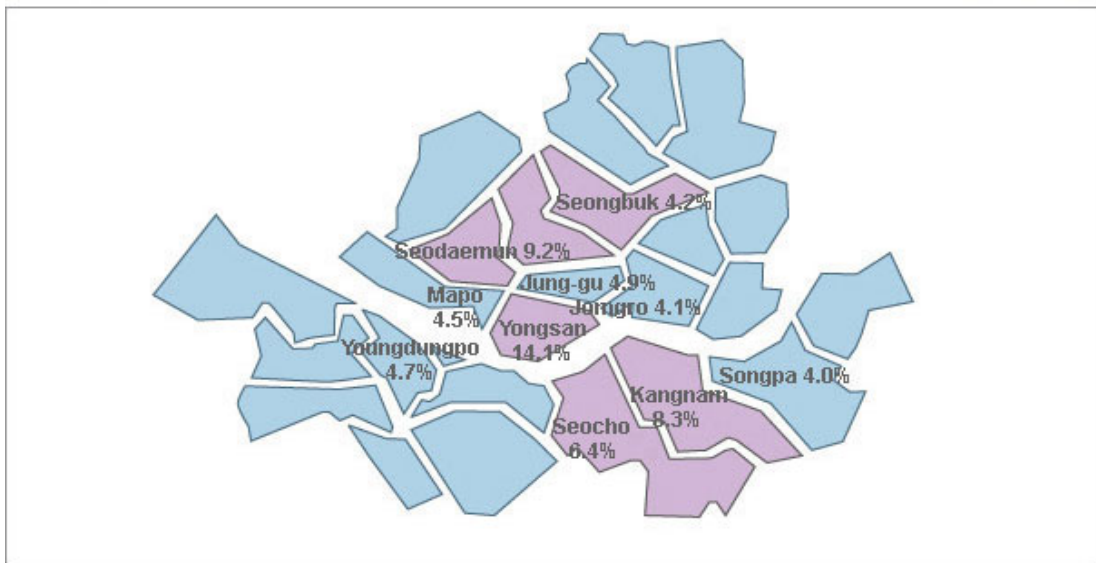
(자료원 : 일본임차주택관리협회)

■ 한 국

□ 외국인 주요 거주지역

- 외국인 주요 거주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 금천구 등이며, 특히 외국계 기업 사무실이 밀집한 영등포구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ASKG은 공단이 위치한 구로구 거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 외국인 거주지역 통계(외국인등록증 소지자 기준)



서울 외국인 거주지역 통계

지역	용산	서대문	강남	서초	영등포	중구	마포	성북	송파	종로	기타	합계
인원	8,707	5,725	5,150	3,989	2,889	3,064	2,793	2,626	2,467	2,568	21,942	61,920
비율	14.1%	9.2%	8.3%	6.4%	4.7%	4.9%	4.5%	4.2%	4.0%	4.1%	35.4%	100%

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한남동, 연희, 연남동과 프랑스 마을, 일본인 마을, 차이나타운 등에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음. 외국식품 전문 매장, 식당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병원,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상업 시설은 서울시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외국인은 임대를 통한 거주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 모두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고 부동산 매매 절차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임차비용

<외국인 주요 거주지역 및 임차비용>

분류	이태원 · 한남동 · 동빙고	이촌동	성북동 · 연희동	방배동
선호구분	외국인 최대 선호지역	일본인 미8군	단독주택 외국인학교	유럽 및 프랑스인
주택	소형, 중형, 대형빌라지역	24평 ~	대형빌라	중형, 대형빌라

	고급단독주택	100평 아파트 지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임대금액	고급주택: 800~1,200만원/월 중형주택: 500~1,000만원/월 일반주택: 200~500만원/월	150~900만원	단독주택 : 800~1,500만원/월 대형빌라 : 700~1,000만원/월	단독주택 : 700~1,000만원/월 중형, 대형빌라: 400~1,000만원/월
추이	중형주택 증가추세	대형아파트 증가추세	개보수 단독주택 증가추세	신축빌라 증가추세

- 임대료는 월 기준으로 책정되며, 보증금에 월세를 내거나 일시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 기간과 일시불 여부는 주택에 따라 다름
-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에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임대료 수준은 높은 편임. 또한 단기계약이 가능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시설이 강남 등 대규모 업무 시설 밀집 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주택정보 제공

-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는 외국인 대상 전문 부동산 업체들이 영어로 임대 및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외국인 대상 부동산 업체 및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외국인 선호 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임. 특히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친환경 신개념 타운하우스(여러가구의 주택이 하나의 건물 안에 자리한 영국형 주거형태)공급계획을 추진 중임
-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를 의존하여 찾는 것 보다 부동산 중개회사에 의뢰하는 편이 보편적임

(2) 교육환경

■ 일 본

□ 정부정책 및 개괄

- 예전에 일본에서는 국제외국인학교에 대해 국내대학의 입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문제 지적이 많았으나 아래와 같이 점차로 수험자격을 인정받고 있음
- 2000년 대학입학자격검정부터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의 졸업자에게 수험자격이 확대됨
- 2002년 국제적인 평가단체 (WASC, ECIS, ACSI)의 평가를 받은 16개 외국인학교의 졸업자에게 공식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함. 단 구미계열에 편중됨
- 2003년 3월에 중앙교육심의회가 대학입학자격의 탄력화 안건을 제안. 9월19일에 “학교교육법시행규칙 및 고지의 일부개정”이 공포, 시행됨. 이로 인해 국제적인 평가단체 (WASC, ECIS, ACSI)의 인정을 받은 16개 학교를 비롯, 다수 학교가 대상이 됨
- 국제적인 평가단체가 인정한 외국인학교는 아래와 같음 (2007년 12월 1일현재)

학교명	소재지
홋카이도 인터네셔널스쿨	홋카이도
토호쿠 인터네셔널스쿨	미야기현
콜롬비아 인터네셔널스쿨	사이타마현
세인트메리츠 인터네셔널스쿨	도쿄도
세이센 인터네셔널학원	도쿄도
성심 인터네셔널스쿨	도쿄도
아메리칸스쿨 인 재팬	도쿄도
크리스천 아카데미 인 재팬	도쿄도
귀국자녀아카데미 인터네셔널스쿨	도쿄도
상모울 인터네셔널스쿨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인터네셔널스쿨	카나가와현
나고야국제학원	아이치현

오사카 인터네셔널스쿨	오사카부
카네디언 아카데미	효고현
마리스트브라더즈 인터네셔널스쿨	효고현
히로시마 인터네셔널스쿨	히로시마현
후쿠오카 인터네셔널스쿨	후쿠오카현
오키나와 크리스천스쿨 인터네셔널	오키나와현

- 위 학교 이외에도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상당으로 지정한 외국인학교는 아래와 같음 (2008년7월24일 현재)

학교명	소재지
에스코라 에 크레쉐 그루포 오피슨	이바라키현
에스코라 핑코 드 쟈테	이바라키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마오카교	토치기현
인스티튜트 에도카쇼날 쟈테 미우다	군마현
인스티튜트 에도카쇼날 센트로 닛뽀 브라지레이로 오이즈미	군마현
에스코라 파라레로 이세사키교	군마현
에스코라 파라레로 오타교	군마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오타교	군마현
콜롬비아 인터네셔널 카나리노	사이타마현
센트로 에도카쇼날 카나리노	사이타마현
센트로 드 아프렌지자젠 로고스	사이타마현
인도네시아학교 도쿄	도쿄도
캐나다인 인터네셔널스쿨	도쿄도
도쿄 한국학교	도쿄도
도쿄 중화학교	도쿄도
리세 프랑코 자포네 드 도쿄	도쿄도
도쿄 요코하마 독일학원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중화학원	카나가와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야마나시교	야마나시현
코레지오 에 크레쉐 사우 에 루스	나가노현
에스코라 파라레오 이나교	나가노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나가노교	나가노현
센트로 에도카쇼날 노바 에타파	기후현
소시에다데 에도카쇼날 브라질리언 스쿨	기후현
인스티튜트 에도카쇼날 에마누엘	기후현
HIRO학원 에스코라 브라지레이아 프로페솔 카와세	기후현
에스코라 아우칸세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브라지레이라 드 하마마츠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하마마츠교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닛포 브라지레이라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우노드에듀카손 인판치우 엔시노 훈다멘타우 에 엔시노 메디오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브라질	시즈오카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하마마츠교	시즈오카현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토요타교	아이치현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토요하시교	아이치현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헤키난교	아이치현
에스코라 상파울로	아이치현
에스코라 넥타	아이치현
코레지오 아우레오	아이치현
코레지오 돈 보스코	아이치현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아이치교	아이치현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스즈카교	미에현
에스코라 닛켄	미에현
코레지오 라티노 드 시가	시가현

(자료원 : 문부과학성)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터네셔널 스쿨은 주로 도쿄 및 도쿄근교에 밀집되어 있음

도쿄 및 도쿄근교 지역	세인트메리츠 인터네셔널 세이센 인터네셔널 아메리칸스쿨 인 재팬 (ASIJ) 니시마치 인터네셔널스쿨 성심인터네셔널 스쿨 브리티쉬 스쿨 인 도쿄 아오바 인터네셔널스쿨 뉴인터네셔널스쿨 도쿄 인터네셔널 스쿨 (TIS) 캐나다인 인터네셔널 스쿨(CIS) 인터네셔널 세컨더리스쿨 (ISS) 세븐스 데이 어드벤처스트 (SDA) K. 인터네셔널 스쿨 도쿄 (KIST) 크리스천 아카데미 인 재팬 상모울 인터네셔널 스쿨 요코하마 인터네셔널 스쿨 요코하마 인터네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
--------------	--

	산타마리아 스쿨 도쿄 요코하마 독일학원
관서지방	캐나다인 아카데미 칸사이 크리스천 스쿨(KCS) 교토 인터네셔널 스쿨 (KIS) 마리스트 브라더즈 인터네셔널 스쿨 (MBIS) 오사카 인터네셔널스쿨 (OIS)
중부지방	나고야 인터네셔널 스쿨
홋카이도	홋카이도 인터네셔널 스쿨

- 국적별로 살펴본 주요 외국인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일본인의 이민 최다 국인 브라질계열 학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브라질학교는 자동차공장 등이 밀집한 아이치현 등 공업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국적	학교명
한국	도쿄 한국학교 건국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금강학원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북한	조선학교 조선대학교
대만	도쿄 중화학교 요코하마중화학원 오사카중화학교
중국	요코하마야마노테중화학교 고베중화동문학교
독일	도쿄요코하마독일학원 고베독일학원
프랑스	리세 프랑코 자포네 드 도쿄
영국	브리티쉬 스쿨 인 도쿄
미국	아메리칸스쿨 인 재팬
브라질	에스코라 알레그리아 드 사벨 에스코라 에 크레셰 그루포 오피슨 센트로 에도카쇼날 노바 에타파 에스코라 파라레오 센트로 드 아프렌지자젠 로고스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에스코라 닛켄 에스코라 상파울로 코레지오 아우레오 코레지오 피타고라스 브라질

	에스코라 파라레오 에스코라 넥타 코레지오 돈 보스코 센토로 에도카쇼날 카나리노 등 이하 생략
--	--

□ 수급현황

- 영어를 사용하는 유명 외국인학교의 경우 입학조건이 있기는 하나 그리 까다롭지는 않음. 학생부모 중 한 명이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가 가능해야 하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므로 학생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수업시 영향이 없음
- 단 인기가 많은 학교일 경우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며, 학비가 연간 200만 엔 정도 소요되므로 비용면에서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있음
- 도쿄중심부에서 남학생에게 가장 인기있는 학교는 세인트메리즈 인터네셔널스쿨이며, 여학생은 성심인터네셔널 스쿨, 세이센 인터네셔널학원 등 있음
- 일본에서는 외국인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영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도 있어 영어를 사용하는 유명 인터네셔널스쿨의 경우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비 용

- 학교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보통, 등록비, 수업비, 급식비, 통학버스비 등이 있으며 매년 지불하는 학교시설개발비도 있음
- 주요 고등학교의 등록비와 연간수업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학교명	등록비 (엔)	수업비 (엔)
세인트메리즈 인터네셔널스쿨	300,000	1,980,000
세이센 인터네셔널스쿨	300,000	1,940,000
카나디언 인터네셔널스쿨	300,000	1,500,000

■ 한 국

□ 정부 정책 및 개괄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제 60 - 2에 근거하여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입학자격 및 비율, 학력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 위의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이 촉진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과부 지침('99)		대통령령 제정(안)
설립주체	· 외국인	⇒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학교 사립법인
입학자격	· 외국인 · 5년 이상 해외거주자 ·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입학비율 제한 없음)		· 외국인(외국인의 자녀) · 3년 이상 해외거주자(입학 비율: 정원의 30% 이내)
학력인정	· 실제학력 인정 불가		·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 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내 국인은 국어, 국사 이수)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 재정지원 근거 없음		·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교육청 지도감독권 강화

(자료원: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서울시의 공식 상주 외국인 인구는 전년대비 약 5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약 17만 5천명이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함
- 한편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공식 집계된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취학학생(대학교 제외)수는 2007년 기준 약 6,100명으로 이중 중·고등학교 과정에 약 2,600명, 초등학교 과정에 2,300명, 유치원 과정에 800명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인기 학교들의 경우 입학 을 위해서는 대기명단 등록 후 6개월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되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시 입학이 가능한 상황임
-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 자격에 국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내국인의 경우 만 5세 이후부터 통상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비율을 10%로 규정함
- 외국인 학교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외국인 학교 설립예산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음. 실제로 2006년 8월 정부 보조금으로 서울용산국제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외국인 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음

□ 학교 현황 및 비용

- 국내에는 44개의 외국인 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며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국인, 몽골인, 노르웨이인, 대만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이 중 23개 학교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 일반적인 입학규정은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기본심사와 인터뷰를 받아함. 아래 내용은 외국인 학교의 교육과정과 등록금을 정리한 것

학교명	교육과정			학비(단위: 원) 환율: 2007년 11월 8일 기준			학생수
	초	중	고	초	중	고	
경남국제외국인학교(2004)	○	○	○	12,000,000	18,600,000		65
광주외국인학교(1999)	○	○	○	8,694,000	9,439,200	10,184,400	86
국제크리스천학교(의정부, 1983)	○	○	○	6,632,050 - 11,356,250			240
군산화교소학교(1941)	○	-	-	화교회비 대체(무상교육)	-	-	13
경기수원외국인학교(2006)	○	○	○	10,694,000 + \$5,270	13,189,000 + \$5,330	16,050,000 + \$5,330	128
대구지구촌기독교외국인학교(2001)	○	○	○	11,679,750	13,189,000	16,050,000	36

대전국제학교(1958)	○	○	○	12,719,000 - 17,988,300 중학교: 19,000,000			576
부산국제학교(1983)	○	○	○	16,115,000			152
부산외국인학교(1996)	○	○	○	15,000,000	16,000,000		131
부산일본인학교(1975)	○	○	-	31,197,207		-	28
부산화교소학교(1951)	○	-	-	1,480,000	-	-	156
부산화교중·고등학교(1951)	-	○	○	-	2,200,000	2,500,000	139
서울국제학교(1973)	○	○	○	16,353,000 - 19,987,000 중학교: 16,300,000 + \$2,000			1,071
서울독일학교(1976)	○	○	-	13,200,000		-	146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1983)	○	○	-	18,000,000		-	155
서울외국인학교(1912)	○	○	○	14,250,000 + \$5,000	14,500,000 + \$5,400	18,200,000 + \$5,700	1,458
서울용산국제학교(1990)	○	○	○	11,928,000	13,543,000 + \$1,600		582
서울일본인학교(1972)	○	○	-	19,200,000		-	422
서울프랑스학교(1974)	○	○	○	프랑스인 6,668,000 그 외 8,360,000	프랑스인 9,064,000 그 외 11,730,000	프랑스인 9,804,000 그 외 12,310,000	319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2007)	○	○	○	13,000,000 + \$3,000	14,000,000 + \$3,000		113
옥포국제학교(2002)	○	○	-	10,560,000	11,880,000	-	113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1996)	○	○	○	14,000,000	14,500,000	15,000,000	168
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2003)	○	○	○	1,603,380	2,189,200	2,290,800	512
의정부화교소학교(1953)	○	-	-	1,800,000	-	-	83
원주화교소학교(1956)	○	-	-	1,440,000	-	-	68
전북외국인학교(2001)	○	○	-	10,630,000	11,520,000		23
제한몽골학교(1958)	○	○	-	7,500,000		-	91
지구촌기독교외국인학교(1997)	○	○	○	14,179,750	15,088,250		63
하비에르국제학교(2002)	○	○	○	9,500,000	11,500,000	33,000,000	12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1989)	○	○	○	11,810,500	12,719,000	12,780,000 + \$600	118
한국외국인학교(경기,	○	○	○	11,920,000	13,740,000	16,460,000	804

2006)				+ \$5,830	+ \$6,200	+ \$7,42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1999)	○	-	-	1,200,000	-	-	71
한국켄트외국인학교	○	○	○	10,902,000 - 14,836,000 중학교: 15,500,000			300
한국한성화교소학교(2001)	○	-	-	1,500,000	-	-	415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1999)	-	○	○	-	2,964,000	3,164,000	628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1958)	-	○	○	-	2,240,000	2,480,000	45

(자료원: 외국인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2007)

(3) 의료환경

■ 일 본

□ 정부정책 및 개괄

- 일본은 의사수의 절대 부족 및 지역에 따른 의사/병원의 편차, 의학교육,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분담, 의료향소 대응 등 산재된 문제가 많음
- 일본의료정책기구의 2008년도 여론조사에서도 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54%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부족문제는 소아과, 산과를 중심으로 문제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내과, 외과 등의 의사확보도 어려워지는 등 사태는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정부에서는 임시적인 의사파견제도를 정함
 - 의사파견제도란 도도부현의 요청을 받아 국가의 지역의료지원중앙회의가 파견여부를 검토하여 전국규모의 병원그룹 등으로부터 의사를 일정기간 파견하는 제도임. 지금까지 홋카이도, 오이타현 등 5개 도현 7개 병원에서 실시된 바 있음. 문제는 일정기간 의사파견이후에도 상근의사를 확보할 수는 없다는 점으로 국가수준의 항구적인 의사확보대책이 시급함
- 일본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임상외수(2004년) 2.0명으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가맹 30개국 중 27위 수준임

- 후생노동성의 검토회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시점에서 필요한 의사수가 주 48시간근무로 26.6만 명으로 추계되나 실제 진료하고 있는 의사는 25.7만 명으로 9000명이나 부족함
- 정부는 1973년부터 1현1의과대학의 설치를 목표로 의사수를 늘여왔으나, 1986년 장래에 의사과잉으로 의료비고등을 초래한다는 추계가 나와 의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책을 전환함. 그 결과 의학부 정원수는 2007년에 7625명으로 피크시보다 8% 감소함
- 2004년에 시행된 신의사임상연수제도가 지방의 의사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음. 종래에는 신졸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연수해왔으나 동 제도로 인해 도시의 민간병원에서도 연수가 가능해지면서 대학병원의 인력이 부족, 지방병원에 의사를 파견하는 역할이 없어짐
- 아래는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2006년도 12월 31일 의료시설 통계치임

	총 합		병원			진료소
			합계	병원	의육기관 부속병원	
	의사수	구성비,%	의사수	의사수	의사수	의사수
합계	263,540	100.0	168,327	123,639	44,688	95,213
~29세	25,996	9.9	25,695	16,480	9,215	301
30~39세	64,602	24.5	57,652	36,666	20,986	6,950
40~49세	67,701	25.7	44,563	34,668	9,895	23,138
50~59세	53,919	20.5	25,279	21,573	3,706	28,640
60~69세	23,268	8.8	8,832	7,994	838	14,436
70세~	28,054	10.6	6,306	6,258	48	21,748
평균연령	48.1세		42.4세	44.2세	37.5세	58.0세

(자료원 : 후생노동성)

- 2007년 정부에서는 긴급대책으로 임시적 의사파견제도 외에도 병원근무의 과중노동 해소, 여성의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정비,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제도의 구축, 의학부정원의 임시적인 증원 등도 인정함

- 이러한 심각한 의사부족으로 인해 대학 의학부 정원의 증가, 의료사무 스태프의 확충 등의 대책이 절실하나,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일본의 국민의료비는 약 32조 엔이며 이중 10조 엔은 세금으로 구성되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투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로서는 2025년도 국민의료비를 48조 엔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사회적임원의 저감, 성인병 예방 등을 제창하고 있음
- 고령화 인구증가 및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재정비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국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 외국인 진료 병원시설 현황(외국어 진찰)

- 일본에서 외국어로 진찰이 가능한 병원은 지역별로 매우 많으나 대부분 영어로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임
- 지방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하고 있음
예) 도쿄도 <http://www.himawari.metro.tokyo.jp/qq/qq13tomnlt.asp>
아오모리현 <http://www.kokusai-koryu.jp/facility/hospital.html>
오사카시 <http://www.ih-osaka.or.jp/enjoy/ko/sick/11.html>
- 한국어로 진찰이 가능한 병원도 많으며 위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함
- 1991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AMDA국제의료정보센터에서는 의료제도, 복지제도의 전문가 및 통역가가 있어 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외국어가 통하는 병원, 의사를 소개하고 있음.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도쿄센터	전화	사무전용 03-5285-8086
		상담전용 03-5285-8088
	팩스	03-5285-8087
칸사이센터	전화	06-4395-0555
	팩스	06-4395-0554

마치다사무소	전화	042-799-3759
--------	----	--------------

□ 의료보험제도 (외국인 혹은 투자가관련)

- 일본에서는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주거지의 시구면읍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지급기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동일함
- 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지급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좋음

<의료보험제도 개요>

적용	적용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 (외국기업의 경우 일본 지점, 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사무소는 개인사업소로 취급됨)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단지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이상인 사람.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예외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의 가입이 면제됨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 존속, 배우자, 자, 손, 매제도 이 보험의 지급대상이 됨
	개호(간호)보험	40세 이상만 적용
지급	치료비	보험 적용 의료기관(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됨)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의료에도 적용됨
	해외치료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경우도 적용됨
	고액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치료비로써 지급됨
보험료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상한 98만엔) 및 표준 상여액(상한 200만엔)의 8.2%, 개호 보험료율은 1.23%이며, 피보험자 및 고용주가 각각 1/2씩 부담함.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는 어느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신고	보험관계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관할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 한국

☐ 정부정책 및 개괄

- 서울시 외국인 의료시설은 크게 외국인진료소가 설치된 종합병원과 외국어로 진료 가능한 일부 개인병원이 있음
 - 현재 서울시내 외국인 진료서 및 개인병원 포함 총 30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가능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11개 병원에서 24시간 외국인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영어 메디칼 핫라인(응급전화시스템)을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 8개 병원에서 운영중임
-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의료비용에 차이가 있고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함

☐ 의료시설 현황

- 현재 설립된 외국계의료시설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예정임. 정부는 경제특구 외국 병원 시범 실시 후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종합병원(외국인진료가능)>

병원명	URL(지역)	전화
-----	---------	----

삼성 서울 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	02-3410-2114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북 삼성 병원	http://www.kbsmc.co.kr	02-2001-2001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연세 세브란스 병원	http://www.iseverance.com	1599-1004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서울 아산 병원	http://www.amc.seoul.kr	02-3010-3114
	지하철 2호선 성내역 1번 출구 (서울 송파구 풍납동)	
삼성 제일 병원	http://www.cgh.co.kr	02-2000-7000
	지하철 3호선/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서울 중구 목정동)	
여의도 성모 병원	http://www.cmcsungmo.or.kr	02-3779-1114
	지하철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강남 성모 병원	http://www.cmckangnam.or.kr	02-590-111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대학교 병원	http://www.snuh.org	02-2072-2114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순천향 대학교 병원	http://www.schuh.ac.kr	02-709-9114
	지하철 1호선 한강진역 /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남 차병원	http://kangnam.chamc.co.kr	02-3468-3000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 출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주 대학교 의료원	http://www.ajoumc.or.kr	031-219-51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서울 적십자 병원	http://www.srch.or.kr	02-2002-8000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시화 종합 병원	http://www.swhosp.co.kr	031-432-26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부산 대학교 병원	http://www.pnuh.co.kr	051-254-0171
	지하철 1호선 토성동(PNUH)역 (부산 서구 아미동)	
왈레스 기념 침례 병원	http://www.wmbh.co.kr	051-580-2000
	지하철 1호선 남산역 8번 출구	
영동 세브란스 병원	http://yd.iseverance.com	02-2019-2114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방 의료원>

병원명	URL(지역)	전화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 병원	http://www.khmc.or.kr	02-9588-114
	지하철 3호선 회기역	
자생 한방 병원	http://www.jaseng.co.kr	02-3218-200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셔틀버스 이용	
해당 한방 병원	http://www.haedang.com	02-335-1010
	지하철 2호선 합정역 6번 출구	
꽃마을 한방 병원	http://www.conmaul.co.kr	02-3475-7114
	지하철 2호선 서울교대역	
강서 한방 병원	http://www.e-kimedi.com	02-3662-7986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1번 출구	
인당 한방 병원	http://www.indang.co.kr	02-557-3906/7
	지하철 2호선 강남역 2번 출구	
함소아 한의원	http://www.hamsoa.com	1544-1075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	
기린 한방 병원	http://www.kirindiet.co.kr	02-515-7300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애완동물 클리닉>

서울 대학교 동물 병원 [<http://vmth.snu.ac.kr>] Tel. 02-880-8661/6
 애완 친구들 [<http://ipetfriends.com>] Tel. 02-555-2272
 닥터 펫 [<http://dr-pet.co.kr>] Tel. 02-3443-8275/6

(4) 교통환경

■ 일 본

□ 정부정책 및 개괄

- 일본의 기간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공공사업에 있어서도 도로건설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교통정책은 정치, 경제, 제도, 세제, 관련기구,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실제 2000년 이전만 해도 교통정책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공공교통을 관할하는 부처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담당부처가 기획조정부, 총무부 혹은 도시부 등 각각 달라 주체적인 활동이 어려웠음

-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쿄도에서 디젤차규제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수도권외의 교통집중 및 철도보다는 트럭수송에 물류가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일본의 교통규제 기준은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00km/h이고 일반도로는 60km/h, 그리고 통행방향이 차량좌측통행으로 한국과는 반대임
-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혹은 외국발행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함.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입국전에 본국에서 취득해야 함. 참고로 운전면허는 18세부터 취득가능함
-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교통체계는 JR, 사철, 지하철, 버스 등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고령자 및 장애자를 배려한 시설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항공

- 도쿄의 나리타국제공항, 오사카의 칸사이국제공항, 나고야의 츄부국제공항의 주요공항 이외에도 도쿄의 하네다공항, 오사카의 오사카국제공항을 비롯한 26개 공항에서 일부 국제선의 이용이 가능함
- 국내선은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를 비롯한 여러 항공사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노선을 운항하므로 신간센(철도)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나 시간여유가 없을 경우는 매우 편리함. 예약은 유명여행사는 JAL(전화 : 0120-25-5971) , ANA(전화 : 0120-029-222)로 가능함
- 주요공항 홈페이지
 - 나리타 국제공항 www.narita-airport.jp/jp/index.html
 - 하네다 국제공항 www.tokyo-airport-bldg.co.jp
 - 칸사이 국제공항 www.kansai-airport.or.jp

□ 선박

수개의 선박회사가 국내 주요항과 러시아, 한국, 중국의 각 항만도시 사이의 정기 항로를 개설하고 있음. 특히 후쿠오카시나 시모노세키시와 한국간은 페

리나 고속선이 취항하고 있음

<일본/한국간의 선박로>

구간	소요시간	운행수
시모노세키항	약 9시간 30분	매일 운행 (1왕복)
하카타항 (페리)	약 9시간 20분	주 3일 운행
하카타항 (고속선)	3시간	매일 운행 (3-4왕복)
오사카항	18시간	주 3일 운행
이즈하라항 (쓰시마)	2시간 40분	2,4주 4일 운행
히타카쓰항 (쓰시마)	1시간 40분	1,3,5주 3일 운행

(자료원 : 일본정부관광국)

□ 철도

- 일본의 철도는 시간이 정확하고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최대규모의 JR(일본철도) 그룹이 국내전역에 노선망을 정비하고 있음
- 고속철도에 해당하는 신간선은 외국여행자에게도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십여분 간격으로 도쿄에서 국내 주요도시로 운행되고 있음
- 열차표의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며 특급, 급행 등의 운행형태나 그린차(1등석)나 지정석, 침대차 등의 좌석형태에 따라서도 추가요금이 발생함
- 근거리 열차표는 각 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장거리 열차표의 구입, 예약은 역 구내의 녹색창구(미도리노 마도구치)에서 가능함
- 도시에는 JR이외에 많은 민간철도 즉, 사철도 있으며 도시교외의 주택지와 도시중심부를 잇는 경우가 많아 주로 출근, 통학을 위한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있음

<도쿄/오사카 주변의 주된 철도회사>

지역	방면	전철명	홈페이지
도쿄	하코네	오다큐 전철	www.odakyu-group.co.jp
	닛코	도부 전철	www.tobu.co.jp

오 사 카	나리타국제공항	게이세이 전철	www.keisei.co.jp
	하네다국제공항	게이힌급행 전철	www.keikyu.co.jp
	도쿄	도쿄 메트로	www.tokyometro.jp
	나라	긴테쓰/긴키 일본철도	www.kintetsu.co.jp
	교토	게이한 전철	www.keihan.co.jp
	고베	한큐 전철	http://rail.hankyu.co.jp
	칸사이	난카이 전철	www.nankai.co.jp

(자료원 : 일본정부관광국)

□ 지하철

-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삿포로, 고베, 교토, 후쿠오카, 센다이의 9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단거리이동시 JR, 사철 등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도쿄는 도쿄메트로 9개 노선, 도영지하철 3개 노선이 있으며 오사카는 7개, 나고야 6개, 요코하마 2개, 삿포로 3개, 고베 2개, 교토 2개, 후쿠오카 3개, 센다이 1개 노선이 각각 운영되고 있음

□ 교통장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공공 교통망을 지닌 국가 중 하나임.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자가용 없이 전차 등으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 교통질서 의식이 높아 난폭운전, 불친절이 적음. 특히 택시, 버스의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는 거의 볼 수 없음
- 주차장확보가 쉬우며 자동차운전자에게 주차장 이용 가능여부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교통단점

- 수도권외의 경우 출퇴근시간은 대부분 전차/지하철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승객이 집중되어 배차간격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혼잡이 있음

- 전차의 경우 JR, 지하철, 사철 등 운영회사에 따라 운임체계가 다르고 운영시스템(쾌속, 특급, 급행, 준급행 등)도 복잡해 외국인이 알기 어려움
- 택시는 물론 신간선, 전차, 지하철 등 이용요금이 매우 비쌈
택시 기본운임은 710엔 (2km)이며 이후 288m마다 90엔 가산, 이외에 송영서비스 400엔, 예약요금 400엔, 심야할증(22:00-5:00, 2할), 고속도로통행료는 별도
- 고속도로가 일반주택지 등에 근접하고 있어 방음벽 설치가 많음. 즉 환경면에서의 도로정비는 미숙한 단계
- 렌터카요금이 비싸며 일본어로만 대응하는 곳이 많아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움. Avis나 Hertz와 같은 전세계망이 있는 유명회사의 경우는 영어가 가능한 곳도 있음

□ 영어 및 외국어 교통안내 현황

- 2007년도 방일 외국관광객수는 엔저기조,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비 13.8% 증가한 835만 명의 과거최고를 기록함. 국가별로는 한국, 대만, 중국, 미국, 홍콩이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관광객 전체의 약 74%를 점하는 수준임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표기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새로 도입된 차량의 경우 영어안내방송 뿐 아니라 열차안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타 노선 지연상황 등 까지 영어로 자세히 표시되고 있음
- 단, 대도시의 경우는 전차내 영어 안내방송이 있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표지판도 있으나, 지방에서 지역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하차역안내는 대부분 일본어 뿐임
- 승차권의 영어표기는 2005년 2월부터 확대실시되어 JR그룹 등에서 승차권명, 발착역 등을 일본어와 영어로 병기하는 것 뿐 아니라 고객의 희망

에 따라 승차일시, 열차명, 좌석번호, 유효기간, 안내문까지 영어로 표기 가능해짐

■ 한 국

□ 정부정책 및 개괄

- 서울시 교통국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292.9만 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
- 서울시 교통국에 따르면, 2006년 서울 시내 도심 평균 주행시속은 14.4km/h 정도로 나타남. 정체 정도는 요일에 관계없이 시간대별로는 오후 시간대(16:00~20:00)에 통행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 도심 교통량이 도심 교통 체계 및 버스체계 개편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8%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정체가 심함. 서울시는 교통란 해소를 위해 201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360km확충할 계획이며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건설을 추진 중임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99.1%에 달하나 유료 주차장 이용 기피 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7.9%로 높은 편이나 지역 편차가 심해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음
- 대중교통의 경우 안내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고 확보가 용이함

□ 버스

- 교통카드 요금 및 환승 할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짐
- 버스의 경우 서울시 교통국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총 402개 노선, 7,792대 버스가 운행 중이며 간선, 노선, 지선, 광역버스로 노선 체계를 개선해 서울 전역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버스 노선은 인터넷 및 시내 교통지도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에도 각 버스별 운행 세부운행 노선이 표기되어 있음. 또한 서울시 전체 버스 운행 상황을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버스가 영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함
- 중앙차로를 이용한 버스의 경우 통행속도가 21.3km/h로 승용차 통행속도 14.4km/h와 비교해 빠른 편이며 노선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편임
-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통과 등 버스 관련 민원신청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택시

- 서울시 교통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서울의 택시 보유량은 약 7만대
- 이용요금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모범택시, 대형택시, 콜택시 등 여러 종류의 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 모든 차량에 영수증 발급기 설치 및 운영
-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전기사와의 의사전달을 위해 택시 차량 내 설치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무료동시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률은 매우 낮음(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 7개 외국어)
-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운행중

□ 지하철

- 서울시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과 서울~수도권간 운행 노선인 분당선, 인천선, 중앙선 총 10개 지하철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도심 지하철(1~8호선) 총 노선 연장은 286.9km이며, 연일 승객

운송량은 약 620만 명 규모로 2009년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수도권 일대에 총 연장 88.2km 의 4개 전철 노선이 생길 예정임

- 지하철 안내방송은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됨

☐ 운전환경

- 국제 면허 소지자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 후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변경할 수 있음
- 운전면허 비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실시되는 운전면허 시험 통과 후 취득 가능(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 서울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은 자유로움
-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안내표지판은 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GPS시스템 구축 환경이 좋은 편

(5) 언어환경

☒ 일 본

- ☐ '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기업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이 49위로 전체 55개의 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함
- ☐ 일본국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본어로 지역에 따라 억양, 방언 등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에서 일본어가 통용되고 있음
- ☐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함. 일상생활에서 한자사용이 많으며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의 수는 1,850자 정도임.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각각 46개의 문자로 구성됨. 또한, 일본에서는 경어체계가 매우 복잡하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 영어능력은 떨어지며 대도시에서는 간단한 영어 단어나 문장이 통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의 경우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움

■ 한 국

- ☐ '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기업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이 35위로 전체 55개의 대상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기록함
- ☐ 한국어는 한국의 공용어로서 약 6,0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용자는 모두가 한국의 단일민족임. 한국어의 어휘체계는 순수한 고유의 말과 한자어 그리고 차용어로 구성되어 있음
- ☐ 한국어에서는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이루어진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함. 고대로부터 중국과의 문화접촉으로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으나 소리와 표기 모두 한국어로 통용됨

V. 결 론

2007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22억불 최고를 기록하였음.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한국과는 대조적임. 이는 일본시장이 아시아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지되는 등 한국의 투자 경쟁국으로 부각되고 있음

일본의 투자환경은 인프라 환경, 규제측면의 투명성 예견가능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한국에 비해서는 노사문제와 정책의 일관성면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정책적으로도 해외투자진출 일변도의 기존 정책방향이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일본의 FDI 실적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일본의 엄청난 입지, 인건비 등의 투자비용과 일본내의 외자에 대한 배타성에 의한 것으로 특히 언어적 어려움과 외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으로 주변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유치지원 정책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반외자적인 분위기는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임

대내적으로 제도의 글로벌화와 추진과 동시에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참고문헌

- 1) 무역투자백서, JETRO, 2008
- 2) 지자체의 기업유치 보조금 상한선, 닛케이신문, 2008. 11. 19
- 3) 2008년 과학기술백서, 일본 문부과학성, 2008
- 4) 200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08. 6
- 5)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 2
- 6) 한국, 중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Invest Korea, 2007. 12
- 7) 2007상반기 오피스·매장용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조사 보고서, 건설교통부, 2007
- 8) 200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2008
- 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
- 10) Global Korea 투자실무가이드 - 일본, KOTRA, 2008. 9
- 11) '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08. 6
- 12) 외국인학교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2007. 11

§ 홈페이지 자료

- 1) Invest Korea : <http://www.investkorea.org/>
- 1) JETRO : <http://www.jetro.go.jp/>
- 2) Investing in Japan : www.investjapan.org/
- 3) 일본 경제산업성 : <http://www.meti.go.jp/>
- 4) 일본 총무성통계국 : <http://www.e-stat.go.jp/>
- 5) 일본 후생노동성 : <http://www.mhlw.go.jp/>
- 6) 일본 정부관광국 : <http://www.welcometojapan.or.kr/>
- 7) 한국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 8) 한국 산업단지공단 : <http://www.kicox.or.kr/>
- 9) e-클러스트 산학연통합정보망 : <http://www.e-cluster.net/>
- 10)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